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4. 30.] [환경부령 제1084호, 2024. 4. 9., 일부개정]

환경부 (화학안전과) 044-201-6848

환경부 (화학안전과-영업허가, 교육, 도급) 044-201-6832, 6836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수입, 확인명세서) 044-201-6847, 6781

환경부 (화학안전과-취급시설기준) 044-201-6837, 6844

환경부 (화학안전과-화학사고) 044-201-6838, 6839

환경부 (화학안전과-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044-201-6843, 683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학물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화학물질의 통계조사 및 정보공개 등

제2조(화학물질확인) ①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화학물질확인(이하 "화학물질확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제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명, 화학물질의 함량, CAS(Cheical Abstracts Service) 번호 등을 적은 서류(이하 "성분명세서"라 한다)
2. 제조자·수출자 또는 확인을 위임받은 자가 제공하는 화학물질확인 관련 서류
3. 제3조제2항에 따른 증명서

②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명세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화학물질확인에 이용한 자료를 첨부하여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이나 시범 생산용 등 시장출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제조 또는 수입 후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7. 5. 30.>

③ 제3조제2항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명세서의 제출을 면제한다

제2조(화학물질확인) ①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화학물질확인(이하 "화학물질확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제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명, 화학물질의 함량, CAS(Cheical Abstracts Service) 번호 등을 적은 서류(이하 "성분명세서"라 한다)
2. 제조자·수출자 또는 확인을 위임받은 자가 제공하는 화학물질확인 관련 서류
3. 제3조제2항에 따른 증명서

②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명세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화학물질확인에 이용한 자료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

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이나 시범 생산용 등 시장출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제조 또는 수입 후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7. 5. 30., 2024. 4. 9.>

③ 제3조제2항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명세서의 제출을 면제한다

[시행일: 2025. 1. 1.] 제2조

제3조(화학물질확인 증명의 신청)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 증명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증명신청서에 성분명세서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신청서를 받은 협회의 장은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3조(화학물질확인 증명의 신청)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 증명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증명신청서에 성분명세서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9.>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신청서를 받은 한국환경공단은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개정 2024. 4. 9.>

[시행일: 2025. 1. 1.] 제3조

제4조(화학물질 통계조사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이하 “화학물질 통계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 17.>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설치 신고를 한 사업장

2. 화학물질을 제조·보관·저장·사용하거나 수출입하는 사업장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 통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대상

②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종, 업체명, 사업장 소재지, 유입수계(流入水系) 등 사업자의 일반 정보

2. 제조·수입·판매·사용 등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 용도, 제품명 및 취급량

3. 화학물질의 입·출고량, 보관·저장량 및 수출입량 등의 유통량

4. 삭제 <2017. 5. 30.>

5.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종류, 위치 및 규모 관련 정보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③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의 지원을 협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 기간, 항목, 내용 및 조사 결과의 처리 및 활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화학물질 통계조사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이하 "화학물질 통계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 17.>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설치 신고를 한 사업장
2. 화학물질을 제조·보관·저장·사용하거나 수출입하는 사업장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 통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대상

②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종, 업체명, 사업장 소재지, 유입수계(流入水系) 등 사업자의 일반 정보
2. 제조·수입·판매·사용 등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 용도, 제품명 및 취급량
3. 화학물질의 입·출고량, 보관·저장량 및 수출입량 등의 유통량
4. 삭제 <2017. 5. 30.>
5.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종류, 위치 및 규모 관련 정보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③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의 지원을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4. 9.>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 기간, 항목, 내용 및 조사 결과의 처리 및 활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일: 2025. 1. 1.] 제4조

제5조(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이하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계획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대상 화학물질 및 취급시설에 관한 사항
2. 조사대상 업종·업체의 규모 및 지역에 관한 사항
3. 조사방법·절차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4. 조사표 작성 및 제출방법에 관한 사항
5. 조사 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사항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의 지원을 협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사업장의 배출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배출량의 산정기준은 화학물질, 취급시설·배출시설 및 취급방법 등에 따라 구분하고, 배출량을 조사할 때에는 실제로 측정을 하거나 화학물질의 투입량 및 배출량의 비율을 고려한 산정계수 등에 따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배출량의 산정기준 또는 산정계수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의2(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1. 환경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화학물질 중 어느 하나를 연간 1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2. 종업원이 30명 이상인 사업장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1. 업종, 업체명, 사업장 소재지 등 사업자의 일반 정보
2. 배출저감 대상 화학물질의 취급량 및 취급 공정
3. 배출저감 대상 화학물질의 배출원(排出源: 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등 특정 장소에서 화학물질을 배출하거나 불특정 장소에서 다수의 작은 규모나 분산된 형태로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지점을 말한다) 및 연간 배출량
4. 향후 5년간 배출저감 방안 및 연도별 배출저감 목표
5.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실적(최초로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화학물질을 1톤 이상 배출한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해의 4월 30일까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배출저감계획서 검토신청서에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이하 “배출저감계획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저감계획서 및 검토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후 별지 제3호의3서식의 배출저감계획서 검토결과서에 배출저감계획서의 적합 여부 상세 내용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배출저감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4서식의 배출저감계획서 수정·보완 요청서에 수정·보완사항 상세 내용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수정·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4항에 따른 검토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제출, 배출저감계획서의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 11. 29.]

제5조의3(배출저감계획서의 공개) ① 배출저감계획서의 일부 내용을 기업의 영업비밀로 보호하려는 자는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2조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비공개 요청을 하려는 자는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배출저감계획서 검토신청서를 제출할 때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비공개 요청을 함께 해야 한다.<개정 2021. 4. 1.>

1. 비공개 요청 대상 정보의 목록
2. 비공개 요청 대상 정보의 항목별 비공개 이유서 및 비공개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비공개 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1. 4.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공개 요청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 11. 29.]

제5조의4(배출저감계획서의 제공 등)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적합 통보를 한 배출저감계획서를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다만, 제5조의3제3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으로 신청인에게 통보된 것은 제외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5항 본문에 따라 배출저감계획서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역 주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1. 업종, 업체명, 사업장 소재지 등 사업자의 일반 정보
2. 배출저감 대상 화학물질의 연간 배출량
3. 향후 5년간 배출저감 방안 및 연도별 배출저감 목표
4.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실적

③ 제2항에 따른 배출저감계획서의 공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공청회나 설명회 등의 개최
2. 관할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방법

[본조신설 2019. 11. 29.]

제6조(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절차 등)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정보(이하 "화학물질 취급정보"라 한다)의 공개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정보의 공개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30., 2018. 11. 29.>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또는 화학물질 취급정보를 비공개하기 원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화학물질 정보공개 심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8. 11. 29.>

1. 비공개를 원하는 정보의 심의신청 항목
2. 심의신청 항목별 비공개 이유서 및 항목별 비공개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화학물질 통계조사표 사본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개 여부에 관한 심의를 청구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라 심의를 청구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신설 2018. 11. 29.>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는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정보공개 소명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18. 11. 29.>

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소명서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개 여부에 대하여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부쳐야 한다. 이 경우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제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개정 2017. 5. 30., 2018. 11. 29.>

⑥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5항에 따라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개 여부가 결정되면 지체 없이 제4항에 따른 소명서 제출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9.>

⑦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소명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개정 2018. 11. 29.>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절차, 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17. 5. 30., 2018. 11. 29.>

제7조(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9. 30.>

②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1. 9. 30.>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소방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공무원 각 1명
2. 화학·환경·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5명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 9. 30.>

④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1. 9. 30.>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0. 9. 29.>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공개대상자(공개대상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공개대상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공개대상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공개대상자인 법인·단체 등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경우
4. 위원이 공개대상자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감정(鑑定)을 한 경우
5.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공개대상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공개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5. 30.]

제7조의3(위원의 해촉) 환경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0. 9. 29.]

제3장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제1절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등

제8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법 제13조제6호에서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같은 법 제10조제8항제5호에 따른 주의사항
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 중 생활화학제품: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주의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제품을 제외한 유해화학물질: 별표 1에 따른 취급기준

[전문개정 2021. 9. 30.]

제9조(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유해화학물질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거나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 중 생활화학제품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 1. 10.>

1. 실험실 등 실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2. 유해화학물질을 다른 취급시설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
3. 흡입독성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4. 유해화학물질을 하역(荷役)하거나 적재(積載)하는 경우
5. 눈이나 피부 등에 자극성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6.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정비·보수작업을 하는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10조(유해화학물질의 진열량·보관량 제한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양을 말한다.

1. 유독물질: 500킬로그램

2.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또는 사고대비물질: 100킬로그램
- ②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판매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양을 초과하여 진열·보관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진열·보관계획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진열·보관계획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현장에 방문하여 외부인 접근 차단 여부,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 및 보관·저장시설의 위험성 등을 확인한 후 진열·보관에 따른 주의사항 등을 적어 별지 제8호서식의 확인증명서를 제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11조(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작성·제출 등) ① 법 제15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양을 말한다.

1. 유독물질: 5,000킬로그램
2.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또는 사고대비물질: 3,000킬로그램
- ②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양을 초과하여 운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운반계획서에 운반자, 경로, 노선, 운반시간 및 휴식시간(별표 1 제5호나목에 따라 휴식을 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포함한 통행도로 상세내역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7. 5. 30., 2020. 9. 29.>
- ③ 제2항에 따라 운반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운반자, 운전기사 또는 호송자가 그 사본을 휴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운반계획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통행도로 주변의 하천 유무, 화학사고 발생 시 확산 위험성, 주거지역 통과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대상 및 방법) 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해야 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2. 27., 2022. 1. 10.>

1.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시설과 진열·보관 장소
2.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컨테이너, 이동식 탱크로리 등을 포함한다)
3. 유해화학물질의 용기·포장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모든 취급시설이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미만으로서,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이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라 한다)의 제출 의무가 없는 사업장의 취급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 ②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 ③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유해성 항목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4. 4. 9.>

제13조(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 등) 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7. 27.>

②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해제 여부 확인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금지물질의 제조·수입·판매 허가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수입·판매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사용·판매계획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9. 29.>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해당 물질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조·수입 또는 사용의 승인을 받아 안전한 관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조건 및 허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줘야 하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허가증 사본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개정 2020. 9. 29., 2023. 10. 4.>

③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경허가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다만, 나목과 다목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가. 허가받은 금지물질의 종류 또는 함량
- 나. 허가받은 예정 물량
- 다. 보관·저장시설의 총 용량
- 라. 허가받은 금지물질의 용도
- 마. 사업장의 소재지(사무실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변경신고 대상: 사업장의 명칭·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

④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 제2항에 따른 허가증 원본

⑤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해당 물질의 용도가 명확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준수사항을 적어 별지 제15호서식의 변경허가증 또는 변경신고증을 신청인에게 해주어야 한다.

제15조(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 허가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작성방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화학물질의 용도 상세 내역 1부
- 2. 화학물질의 위해성 자료 1부
- 3. 대안 분석 및 실행가능성 자료 1부
- 4. 대체 계획 자료 1부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법 제19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허가번호, 용도와 제조·수입·사용의 한정기간 및 준수사항 등을 적어 별지 제17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

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재허가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허가증 원본과 법 제19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료 중 변경된 사항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재허가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법 제19조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허가번호, 용도와 제조·수입·사용의 한정기간 등을 적어 별지 제17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16조(제한물질의 수입허가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제한물질 용도의 상세내역서과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증 사본(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해당 물질의 용도가 명확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제한물질의 수입허가에 대한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경허가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다만, 나목과 다목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허가받은 제한물질의 종류 또는 함량

나. 허가받은 예정 물량

다. 보관·저장시설의 총 용량

라. 허가받은 제한물질의 용도

마. 사업장의 소재지(사무실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변경신고 대상: 사업장의 명칭·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

④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제한물질의 수입허가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2항에 따른 허가증 원본

⑤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해당 물질의 용도가 명확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준수사항을 적어 별지 제22호서식의 변경허가증 또는 변경신고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17조(유독물질의 수입신고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유독물질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수입신고서에 유독물질 성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별지 제24호서식의 수입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유독물질의 수입신고에 대한 변경신고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

1. 신고한 유독물질의 종류 또는 함량
2. 신고한 수입 예정물량
3. 신고한 유독물질의 용도
4. 사업장의 명칭·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
- ④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유독물질의 수입신고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증 원본
- 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26호서식의 변경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유독물질 수입신고 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의 지원을 협회에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 ①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수출국별로 해당 물질을 최초로 수출하기 전에 별지 제27호서식의 수출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9. 29.>

1. 법 제2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수출통보서
2.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3. 수출자 책임보증서
-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승인 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제1호의 수출통보서를 수입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수입국이 해당 화학물질의 수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수출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수입국이 수입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승인받은 물질의 종류 또는 함량
 2. 승인받은 수출 예정 물량(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사업장의 명칭·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
- ⑤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제3호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3항에 따른 수출승인서 원본
-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변경 사항이 수입국의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수입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2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 등

제19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 개시일 60일 이전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 10.>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2.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공동비상대응계획 작성·제출에 관한 자료(공동으로 비상대응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 ②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별표 1 제5호라목 단서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운반·보관하는 시설
 2. 별표 3의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하위 규정수량 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내 취급시설
 3.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차량(유해화학물질을 차량에 싣거나 내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5.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6.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이 담긴 용기·포장을 보관하는 시설(「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7.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이 담긴 용기·포장을 보관하는 시설(「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지체 없이 역외로 반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8. 「농약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판매업을 등록한 자가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시설
 9. 「항공보안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내에서 「항공사업법」 제2조제8호의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34호의 공항운영자가 설치·운영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③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내용 및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송부한 경우 그 송부된 서류에 별표 4 제1호나목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제외하고 작성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라 제출한 안전성향상계획(이하 “안전성향상계획”이라 한다) 2부 및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적합하다고 판정한 심사의견서(안전성향상계획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라 제출한 공정안전보고서(이하 “공정안전보고서”라 한다) 2부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적합하다고 판정한 심사의견서(공정안전보고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안전성향상계획 또는 공정안전보고서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서
2. 별지 제31호의3서식의 안전성향상계획·공정안전보고서 변경사항 부존재 확인서

⑥ 법 제2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 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완료일 30일 이전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2.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공동 비상대응계획 작성·제출에 관한 자료(공동으로 비상대응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⑦ 법 제23조제3항제2호에서 "유해화학물질의 품목, 농도, 성상 또는 취급시설의 위치가 변경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범위(이하 "총괄영향범위"라 한다)가 확대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시장출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시범생산으로서 생산기간이 60일 이내인 일시적인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경우

나.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함량·농도 또는 성상이 변경되는 경우(물질의 인화성 또는 급성독성 등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는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같은 사업장 내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⑧ 법 제23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하 "주요취급시설"이라 한다)"이란 별표 3의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상위 규정수량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내 취급시설을 말한다.

⑨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주요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최초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별지 제31호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내용·방법 및 제출, 변경제출의 대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21. 4. 1.]

제19조의2(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9조제1항, 제4항 또는 제9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신청서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 검토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검토한 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도(위험성 및 사고발생 가능성 등에 따라 가위험도·나위험도 및 다위험도로 구분한다) 및 적합 여부 등을 적은 별지 제33호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결과서 또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 검토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내줘야 한다.

-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9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송부받은 안전성향상계획 또는 공정안전보고서 중 별표 4 제1호나목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검토를 생략한다.
- ③ 법 제23조제6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신규로 받아야 하는 시설(해당 시설이 설치되어 현장확인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최근 3년 이내에 화학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3.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성 및 사고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고시한 시설
-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 일시·목적·항목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사전 통보일부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수정·보완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의3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수정·보완 요청서로 해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라 수정·보완을 요청받은 자는 수정·보완한 자료를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정·보완을 요청받은 자가 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각각 30일의 범위에서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수정·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수정·보완한 자료를 제출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⑦ 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자(부적합 통보 대상 취급시설을 계속해서 설치·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3개월 이내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해야 한다.
- ⑧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23조제8항 전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한 날부터 그에 따른 검토의견을 통보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지역사회와의 공조 및 주민의 보호·대피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필요하다고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4. 1.]

제19조의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등) ①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의 점검 방법 및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면점검: 1년 주기
 2. 현장점검(가위험도에 해당하는 사업장만 해당한다): 5년 주기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 특별이행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이행점검을 받은 사업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현장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화학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중 특별한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
2. 제1항제1호에 따른 서면점검 결과 특별이행점검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때
3. 화학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특정 유해화학물질이나 공정을 대상으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는 때
-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점검을 완료한 때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그 점검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화학물질안전원장은 그 점검 결과를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④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을 받은 자는 조치기한 내에 해당 조치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점검의 내용·방법·시기 및 점검 결과의 통보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4. 1.]

제19조의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① 법 제23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지역 주민에게 고지해야 하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23조의3제1항 각 호의 정보를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이하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② 법 제23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고지해야 하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통보를 받은 해당 연도 내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개별통지 방법: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통지
2. 개별설명 방법: 개별 설명 후 서명날인
3. 집합전달 방법: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전달
4. 그 밖의 고지 방법: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반상회보·소식지 게재 등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③ 사업장이 서로 인접해 있는 등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제2항에 따른 고지를 공동으로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지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4. 1.]

제20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야 한다.

② 법 제23조의4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2.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

3. 화학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의 비상대응협의체계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내 사업장 또는 화학사고 대응 관계 기관이 비상대응계획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법 제23조의4제2항 후단에 해당하는 자료는 제외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4. 1.]

제20조의2 삭제 <2021. 4. 1.>

제20조의3 삭제 <2021. 4. 1.>

제20조의4 삭제 <2021. 4. 1.>

제20조의5 삭제 <2021. 4. 1.>

제20조의6 삭제 <2021. 4. 1.>

제21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그 외벽부터 「건축법」 제2조제2호의 건축물의 경계 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의 생태·경관보호지역의 경계까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1조의2(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의 특례)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서 별표 5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의 적용을 위하여 안전성에 관한 평가(이하 이 조에서 "안전성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서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관리하기 위한 사업장의 물리적 공간이 부족하여 대규모의 시설이 불가피하거나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취급시설
 2. 취급시설의 설치에 관한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어 별표 5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의5서식의 안전성 평가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서면평가: 별표 5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사유 및 별표 5의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성이 확보되었는지를 제출된 증명서류를 통하여 평가
 2. 현장평가: 해당 취급시설의 설치 조건 및 안전성 확보 수준이 서면평가 결과와 일치하는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여 평가

- ④ 제1항에 따라 해당 취급시설에 대하여 설치 및 관리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적용하려는 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안전성 평가의 결과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성 평가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7. 5. 30.]

제22조(검사기관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기관 외에 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와 안전진단에 관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한 기관
- ②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 및 안전진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와 안전진단에 관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22조(검사기관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 4. 9.>

1. 한국환경공단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기관 외에 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와 안전진단에 관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한 기관
- ②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 및 안전진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와 안전진단에 관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시행일: 2025. 1. 1.] 제22조

제23조(취급시설의 정기·수시검사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해당 시설을 가동하기 전에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별지 제34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신고서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9. 29.>

- ②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정기검사를 받는 것이 어렵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1. 4. 1.>
- ③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화학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수시검사 대상임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⑤ 법 제24조제3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 ⑥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은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정기검사, 수시검사) 결과신고서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0. 9. 29.>
- ⑦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의 내용과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검사결과서의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⑧ 법 제24조제4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생산용 설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설비로서 연속적으로 60일을 초과하여 운영하는 설비를 말한다.<신설 2020. 9. 29.>
 1. 설비의 작동방식이 회분식(回分式)인 경우: 단위설비의 1회 처리용량이 100킬로그램 이상에 해당하는 설비
 2. 설비의 작동방식이 연속식인 경우: 단위설비의 시간당 처리용량이 10킬로그램 이상에 해당하는 설비

제24조(안전진단 등)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법 제24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0. 9. 29.>

- ② 법 제24조제5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개정 2020. 9. 29., 2021. 4. 1.>
 1. 가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결과서(이하 이 항에서 “검토결과서”라 한다)를 받은 날부터 매 4년
 2. 나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토결과서를 받은 날부터 매 8년
 3. 다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토결과서를 받은 날부터 매 12년
 4.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의 적합 통보일부부터 매 12년
- ③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법 제24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개정 2020. 9. 29.>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한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안전진단결과신고서에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

환경관서의 장은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진단의 항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5조(취급시설 개선명령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취급시설 개선명령서에 개선사항 상세내역을 첨부하고 이행기간을 적어 해당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기간은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 시급성 및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12개월의 범위에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서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9호서식의 이행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개선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취급시설의 개선명세서
2. 이행계획 및 공사비
3. 이행기간 동안의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이행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등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행계획서의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수정·변경한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 내에 개선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 10일 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그 이행계획을 모두 이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0호서식의 이행결과 보고서에 개선명령 이행결과 상세보고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현장을 방문하여 이행상태를 확인하되, 법 제24조제2항·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하여 이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개정 2018. 10. 26.>

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가동중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취급시설 가동중지 명령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명령서를 받은 자는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시설의 가동을 중지하여야 하고 가동중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해당 시설을 가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점검대장에 기록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쉽게 볼 수 있거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6조제2항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안전성 여부”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물 반응성 물질이나 인화성 고체의 물 접촉으로 인한 화재·폭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2.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인화성 가스가 공기 중에 존재하여 화재·폭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는 물질이 취급시설 및 장비 주변에 존재함에 따라 화재·폭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4. 누출감지장치, 안전밸브, 경보기 및 온도·압력계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
5.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인보호장구가 본래의 성능을 유지하는지 여부
6. 유해화학물질 저장·보관설비의 부식·손상·균열 등으로 인한 유출·누출이 있는지 여부

제4장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제1절 유해화학물질 영업구분 및 영업허가

제27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①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

1.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서류(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 제1호의 서류는 제외한다)
2.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명세서(시설별 면적 및 용량, 수량, 위치도 및 배치평면도 등을 적은 자료를 말한다)
4. 유해화학물질 장비·기술인력 명세서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증 또는 그 사본(법 제27조 제4호의 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6.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30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 나. 공증인이 공증하고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신청인의 진술서
 - 다.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해당 국가공관의 영사관이 인증한 사서증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개정 2022. 1. 10.>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3. 법 제30조 각 호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③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④ 법 제28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5일을 말한다.

⑤ 법 제28조제4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용량·위치,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1. 4. 1.>

제28조(허가증의 발급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8조제4항 본문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5호서식의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증을 재발급하거나 정정(訂正)하여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허가증의 훼손 또는 분실 등으로 허가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2.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허가증과 정정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증에 적힌 사항의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

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①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4. 7., 2017. 5. 30., 2018. 10. 26., 2021. 4. 1., 2022. 1.

10.>

1. 변경허가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가목과 나목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누적된 증가량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구분별 보관·저장시설의 총 용량 또는 운반시설 용량이 증가된 경우

나.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이 증가된 경우

다.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품목이 추가된 경우(제2호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라. 같은 사업장 내에서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신설·증설·위치 변경 또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이 있는 경우(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마.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사무실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바. 제1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별표 3의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하위 규정수량 이상으로 증가된 경우

2. 변경신고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업장의 명칭·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나. 시장출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시범생산(생산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으로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일시적으로 변경된 경우

다. 같은 사업장 내에서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신설·증설·부지 경계로의 위치 변경 또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이 있는 경우(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라.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의 종류가 변경되거나 대수 또는 용량이 증가한 경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을 변경한 경우

②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제1항제2호가목(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및 마목의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 같은 호 나목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별지 제46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6. 4. 7., 2017. 5. 30., 2018. 10. 26., 2020. 9. 29., 2021. 4. 1.>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제1항제1호라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 2의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제1항제1호바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제28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증 원본
4. 시범생산 계획서(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5.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확인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항목 중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장외 평가정보(이하 "장외 평가정보"라 한다)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2호다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6.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서(취급시설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검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변경완료예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는 조건으로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신설 2021. 4. 1.>
- ④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1. 4. 1.>
 1.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변경완료예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받을 수 있음을 검사기관이 증명하는 서류
- ⑤ 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자는 검사기관의 검사결과서를 변경완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1. 4. 1.>
- ⑥ 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신설 2022. 1. 10.>
 1. 제1항제1호마목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2. 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
 - 가. 사업장의 명칭 또는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 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법 제30조 각 호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제1항제2호마목의 경우: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 ⑦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5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증 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서를 받은 이후에 별지 제47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신고증을 내줘야 한다.<개정 2021. 4. 1., 2022. 1. 10.>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변경신고 절차, 시범생산계획서 및 장외 평가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16. 4. 7., 2021. 4. 1., 2022. 1. 10.>

제30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정보제공)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8조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제5항에 따른 허가일·변경허가일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신고 수리일부터 30일 이내에 허가증 사본 또는 신고증 사본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 9. 29.>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8조제8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현황 자료를 1월 3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관할 소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화학사고 대응 기관에 제공해야 한다.<개정 2020. 9. 29.>

제30조의2(본인 인증 방법 등)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구매자에 대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9.>

1. 팩스 또는 우편으로 수신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확인
2.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를 통한 확인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라 지정된 본인확인 기관을 통한 본인확인

[본조신설 2017. 12. 27.]

제31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 법 제29조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 5. 30., 2017. 12. 27., 2020. 9. 29., 2021. 4. 1.>

1. 한 번에 1톤 이하의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120톤 이하의 유독물질(유독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은 제외한다)을 사용하는 자. 다만, 사업장이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연간 60톤 이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으로 지정된 구역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전용공업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연간 240톤 이하로 한다.
3.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 지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60톤 이하의 제한물질(제한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은 제외한다)을 사용하는 자
4. 사고대비물질(유독물질이 아닌 것에 한정한다)을 사용하는 자 중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서 사고대비물질을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 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
 - 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5.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만 설치·운영하는 자
 - 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않는 자
6. 「약사법」에 따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판매업자 중 유해화학물질을 가정용품으로 판매하는 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자 외에 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필요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31조의2(시약 판매자의 고지 방법 등) 법 제29조제2호에 따라 영업허가를 면제받아 시약을 판매하는 자는 구매자에게 법 제2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을 시약용기에 표시하거나 또는 별지 제47호의2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시약 정보 요약서를 제공(전자문서를 통한 제공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추가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9. 11. 29.>

1. 진열·보관하여 판매하는 경우: 판매장 입구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할 것
2.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것

[본조신설 2017. 12. 27.]

제31조의3(시약 판매업 신고 등) ①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의3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서에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11. 29.>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7호의4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확인증을 그 신고를 한 자에게 내줘야 한다.<개정 2019. 11. 29.>

[본조신설 2017. 12. 27.]

제31조의4(시약 판매업 변경신고 등) ① 법 제29조의3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 대표자 성명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2.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품목의 수가 법 제29조의3제1항·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100분의 30 이상 증가한 경우

②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7호의5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9. 11. 29.>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31조의3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확인증

③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변경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7호의4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확인증에 변경내용을 기재하여 그 변경신고를 한 자에게 내줘야 한다.<개정 2019. 11. 29.>

[본조신설 2017. 12. 27.]

제2절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관리

제32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①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별지 제48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화학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수급인이 도급받은 업무를 긴급하게 수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급 업무의 수행을 시작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 5. 30., 2020. 9. 29.>

1. 신청인·도급인·수급인의 주요생산품 및 매출액 등에 관한 자료
2. 도급계획서(도급대상 작업의 개요, 도급사유, 수급인이 보유한 개인보호장구 명세서, 수급인의 취급시설 및 인력 명세서, 제4항제4호에 따른 능력과 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포함해야 한다)
3. 화학사고 안전관리 계획서
4. 긴급 도급 사유서(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도급받은 업무를 긴급하게 수행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법 제31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신설 2020. 9. 29.>

1. 유해화학물질의 품목
2. 도급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3. 도급기간

③ 법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별지 제48호의2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0. 9. 29.>

1. 변경된 도급계획서
2.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변경된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④ 법 제31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 능력과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개정 2020. 9. 29.>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인보호장구를 완비할 것
2. 법 제2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할 것
3.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이수할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능력과 기준을 맞출 것

⑤ 법 제31조제5항에서 "수급인에게 무리한 취급시설의 운영 등 환경부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0. 9. 29.>

1. 도급계약 등에서 정한 공사·보수 기간의 단축
2. 심야시간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공사·보수(화학사고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게 공사·보수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3. 화학사고 발생 우려에 따른 수급인의 정당한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및 취급시설의 공사·보수·운영 지시
4. 화학사고 발생 사실 또는 발생 우려의 은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

제33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기준) 법 제32조제1항에서 “해당 영업자의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및 종사자 수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7. 5. 30.>

1.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1명. 다만, 종업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이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를 겸할 수 있다.
2.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
 - 가. 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을 영위하는 자: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20대당 1명. 다만,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의 대수가 20대 이하인 경우는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나.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인원. 다만,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보관·저장업, 판매업(취급시설 없이 판매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사자 500명당 1명을, 유해화학물질 사용업의 경우에는 종사자 5천명당 1명을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 1)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천톤 미만인 경우: 1명
 - 2)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천톤 이상 만톤 미만인 경우: 2명
 - 3)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만톤 이상 십만톤 미만인 경우: 3명
 - 4)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십만톤 이상 백만톤 미만인 경우: 4명
 - 5)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백만톤 이상인 경우: 5명

제34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신고 등) ①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선임, 해임 또는 퇴직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9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0호서식의 선임·해임·퇴직서
 2.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명단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별지 제51호서식의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③ 법 제3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에 필요한 기간의 연장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업무를 대리하는 자의 이력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승인여부를 검토하여 별지 제53호서식의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35조(안전교육기관)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 4. 7., 2017. 5. 30., 2020. 9. 29.>

1. 화학물질안전원
2. 삭제 <2022. 1. 10.>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중에서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안전교육의 전문성에 관한 평가 결과 안전교육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전문기관

가. 화학물질안전원이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30일 이상 수료한 전문가 또는 환경·화학·화학공학 분야의 박사학위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안전·화공·가스·대기관리·수질관리·폐기물처리·산업위생관리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3명 이상 보유할 것

나. 동시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교육장을 갖출 것

다. 가목에 따른 전문가 외에 화학물질 안전 분야와 관련된 실무·연구 또는 강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보유하는 등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일 것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기관의 교육담당자는 매년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2. 1. 10.>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2. 1. 10.>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기관이 제1항제3호 각 목의 요건과 안전교육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7. 5. 3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교육의 전문성에 관한 평가 기준과 방법, 그 밖에 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 5. 30.>

제36조(안전교육계획) ①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기관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 10.>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교육의 기본방향
2. 안전교육 수요 및 장기 추계
3. 안전교육 과정의 설치 계획
4. 안전교육 교재 편찬 계획
5. 안전교육 성적의 평가방법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7조(안전교육의 실시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 시간은 별표 6의2와 같다. <개정 2017. 5.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가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이행해야 하는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16시간의 안전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개정 2017. 5. 30., 2021. 4. 1.>

③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 및 법 제27조제2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취급시설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화학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화학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8시간의 안전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신설 2016. 4. 7., 2017. 5. 30.>

④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와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35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온라인 교육을 포함한다)을 매년 1회, 2시간 이상 받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7., 2017. 5. 30.>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내용은 별표 6의3과 같다.<신설 2016. 4. 7., 2017. 5. 30.>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한 교육기관 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결과를 매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7., 2022. 1. 10.>

1.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내용 및 결과
2.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자 명단
3.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강사 이력서

⑦ 법 제33조제2항 단서에 따른 안전교육 경비는 교육 내용 및 교육 기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6. 4. 7.>

제38조(취급중단 및 휴업·폐업 시 조치사항) ①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30일 이상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30일 이상 중단하는 등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중단하려는 경우 미리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부인의 출입이 없도록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2. 유해화학물질이 대기·수계·토양 등 환경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취급시설을 밀폐할 것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주기적인 자체점검 계획을 마련할 것
4. 저온 동파로 인한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온 대책을 마련할 것
5. 취급 중단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잔여 유해화학물질을 처분할 것

②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취급방식을 수동으로 변경함으로써 취급자가 직접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도록 변경하는 등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방식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할 것
2. 유해화학물질이 대기·수계·토양 등 환경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39조(취급중단 및 휴업·폐업 신고 등)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그 영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려 하거나 60일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업·휴업 또는 취급시설 가동중단 예정일 10일 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7.>

1.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증 원본
2. 영업실적보고서(폐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3. 법 제34조제1항 단서 및 제38조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의 이행여부에 관한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신고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사후 신고 사유서를 첨부하여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17. 12. 27.>

1.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중단 기간을 60일 미만으로 예정하여 해당 시설의 가동을 중단하였으나 보수작업이 추가되는 등 당초 가동중단 기간을 60일

- 이상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한 날부터 60일 이내
2. 예고 없는 정전 등으로 정상적인 시설 가동이 불가능함에 따라 화학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 없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긴급하게 중단한 경우: 해당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한 날부터 10일 이내
-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해당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처리 및 보관 등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점검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7.>

제40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34조의2제2항 및 제35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6. 7. 27.>

-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 및 별표 7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5호 서식의 개선명령서에 개선조치 상세내역을 첨부하여 그 대상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제41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권리·의무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6호서식의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증 원본
 2. 권리·의무의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개정 2022. 1. 10.>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3. 법 제30조 각 호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제42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① 법 제3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공동 활용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활용계획서
 2. 개별업소의 명세 및 위치도
 3. 개별업소별 유해화학물질 관련 시설 및 장비의 내역서
 4. 개별업소 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권리·의무 등의 협약서
 5. 개별업소별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업무대행자 지정 명세서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첨부서류의 작성방법은 별표 8과 같다.

제43조(공동 활용의 변경신고) ① 법 제38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업소 및 공동 활용 업소

2. 공동 활용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용량(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공동 활용하는 업무대행자의 대행 범위
4.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권리·의무 등의 협약서 중 유해화학물질 사고 시의 공동대처 방안
 - ②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동 활용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공동 활용자의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증 원본

제5장 화학사고의 대비 및 대응 등

제1절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등

제44조(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법 제40조 본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45조 삭제 <2021. 4. 1.>

제46조 삭제 <2021. 4. 1.>

제47조 삭제 <2021. 4. 1.>

제47조의2 삭제 <2021. 4. 1.>

제48조 삭제 <2021. 4. 1.>

제2절 화학사고의 대응 등

제49조(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①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별 유출량·누출량 및 화학사고 양태(樣態)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즉시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라 화학사고의 원인·규모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0조(현장수습조정관의 요건) 법 제44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현장수습조정관”이란 화학사고 대응능력을 갖춘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50조의2(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등)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현장수습조정관(이하 “현장수습조정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법 제44조의 2제1항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가동 중지를 명령(이하 “가동중지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9.>

1. 화학사고에 따른 화재·폭발 및 누출 등으로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하거나 가동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2. 화학사고로 인하여 해당 화학물질이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대기, 수계 또는 토양 오염의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현장수습조정관은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중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게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가동중지명령서를 통지한 후 별지 제63호의3서식의 가동중지표지를 그 시설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가동중지명령서를 통지하기 전에 가동중지표지를 해당 시설에 부착하고 가동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가동중지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관계 근로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당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2. 27.]

제50조의3(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해제 등) ①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가동중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가동중지명령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가동중지명령 해제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가동중지명령을 받은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조치를 확인·점검한 결과 추가적인 위험이나 환경오염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가동중지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중지명령을 해제할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별지 제63호의4서식에 따른 가동중지명령 해제 확인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2. 27.]

제51조(조치명령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조치명령서에 조치명령 상세 내역서를 첨부하여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기간은 해당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변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조치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서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65호서식의 이행계획서에 이행계획서 상세 내역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서를 받은 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66호서식의 이행결과서에 이행결과서 상세 내역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행결과서를 받은 경우에는 조치명령의 이행 실태를 현장에서 확인·점검한 후 별지 제67호서식의 이행확인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52조(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48조에 따라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국내외 정보를 수집·분석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화학물질의 명칭(국문명, 영문명, 유사명 등), CAS(Cheical Abstracts Service) 번호 및 국제연합 번호 등 화학물질 일반정보
2.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위험물 및 독성가스 등 화학물질 관련 법률에 따라 관리되는 화학물질 정보
3.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
4. 사업장별 화학물질 취급량 및 취급시설 등에 관한 정보
5. 화학물질의 용도·위험성·방재요령 등 화학사고 대비에 필요한 정보
6. 화학물질의 누출·유출시 이격거리, 화재 시 이격 및 방호활동거리 등 화학사고 대응에 필요한 정보
7. 화학사고 발생 이력에 관한 정보
8.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함유 제품의 국내외 정보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 등과 관련된 정보
 -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48조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 안전과 관련된 공공기관 또는 단체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협의체에 참여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각각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상호간에 제공·공유하여 제1항 각 호의 국내외 정보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집·분석 및 관리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52조의2(전자민원창구의 처리 업무) 법 제48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에 관한 업무
2.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업무
3.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관한 업무
4. 법 제1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진열·보관계획서, 운반계획서에 관한 업무
5. 법 제1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및 해제에 관한 업무
6. 법 제18조에 따른 금지물질의 취급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7. 법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 허가 등에 관한 업무
8. 법 제20조에 따른 제한물질 수입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유독물질 수입신고 등에 관한 업무
9. 법 제21조에 따른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업무
10. 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제출·검토 및 위험도·적합여부 통보에 관한 업무
11. 법 제24조에 따른 취급시설의 검사 및 안전진단에 관한 업무
12. 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13. 법 제29조의3에 따른 시약 판매업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14. 법 제31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15. 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에 관한 업무
16. 법 제3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및 휴업·폐업 신고 등에 관한 업무
17. 법 제37조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 신고에 관한 업무
18. 법 제3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19. 법 제46조에 따른 조치명령 등에 관한 업무
20. 법 제49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실적보고 등에 관한 업무
21. 법 제52조에 따른 자료보호의 신청에 관한 업무

[본조신설 2022. 1. 10.]

제53조(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실적 보고 등)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부실적보고서를 첨부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일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자료를 제외하고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

4. 7., 2017. 12. 27., 2021. 4. 1.>

1.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69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
 2.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70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
 3.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71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
 4. 법 제4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72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
 5. 법 제4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73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
 6. 법 제49조제1항제7호 또는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74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
- ② 협회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된 전년도 실적보고서를 종합·분석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1. 4. 1.>
- ③ 환경부장관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부실적보고서 외에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 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1. 4. 1.>
- ④ 법 제4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영 별표 1 제1호라목2)·3)에 따라 연간 매출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영 별표 1 제1호에 따른 과징금을 산정할 때 이를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21. 4. 1.>

제53조(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실적 보고 등)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부실적보고서를 첨부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일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자료를 제외하고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 4. 7., 2017. 12. 27., 2021. 4. 1., 2024. 4. 9.>

1.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69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
2.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70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
3.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71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
4. 법 제4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72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

- 5. 법 제4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73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
- 6. 법 제49조제1항제7호 또는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74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
- ② 한국환경공단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된 전년도 실적보고서를 종합·분석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1. 4. 1., 2024. 4. 9.>
- ③ 환경부장관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부실적보고서 외에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 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1. 4. 1.>
- ④ 법 제4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영 별표 1 제1호라목2)·3)에 따라 연간 매출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영 별표 1 제1호에 따른 과징금을 산정할 때 이를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21. 4. 1.>

[시행일: 2025. 1. 1.] 제53조

- 제54조(출입·검사)**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한다. <개정 2017. 5. 30., 2018. 11. 29., 2021. 4. 1.>
- 1. 화학물질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안전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정하는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계획에 따른 경우
 - 2. 화학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 4. 이 법에 따른 허가·신고 또는 승인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5.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및 제2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장외 평가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실 여부 및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 5의2. 제29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시범생산 계획서의 사실 여부 및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 5의3. 삭제 <2021. 4. 1.>
 - 5의4. 삭제 <2021. 4. 1.>
 - 6. 법 제2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 7. 법 제25조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법 제46조에 따른 조치명령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 8. 법 제3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 9. 법 제40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 10. 삭제 <2021. 4. 1.>
 - 11. 법 제43조에 따른 화학사고 신고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 12. 법 제44조에 따라 화학사고 현장 대응을 하려는 경우
 - 13. 법 제45조에 따른 화학사고 영향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5조(화학물질 검사기관)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채취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그 화학물질이 유독물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화학물질안전원
3.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5.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보건환경연구원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55조(화학물질 검사기관)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채취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그 화학물질이 유독물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4. 9.>

1. 국립환경과학원
2. 화학물질안전원
3.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4. **한국환경공단**
5.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보건환경연구원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시행일: 2025. 1. 1.] 제55조

제56조(서류의 기록·보존)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년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화학물질의 성분명세서·확인증명서 및 제조자·수출자 또는 수입대행자가 제공하는 화학물질 확인 관련 서류
2. 수입신고증 등 수입 관련 서류(수입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5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화학물질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75호서식부터 제78호서식까지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1호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7. 5. 30., 2019. 4. 17.>

제57조(자료보호의 신청 등) ① 법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자료보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협회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30.>

1. 보호 내용의 요지 및 이유서
2. 보호대상 자료의 목록

- ② 영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료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연장 신청서에 제3항에 따른 결과서를 첨부하여 자료보호기간 만료 30일 전에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협회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7. 5. 30.>
- ③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협회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료보호 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81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 5. 30., 2019. 11. 29.>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료보호 신청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17. 5. 30.>

제57조(자료보호의 신청 등) ① 법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자료보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한국환경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30., 2024. 4. 9.>

1. 보호 내용의 요지 및 이유서
2. 보호대상 자료의 목록

② 영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료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연장 신청서에 제3항에 따른 결과서를 첨부하여 자료보호기간 만료 30일 전에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한국환경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7. 5. 30., 2024. 4. 9.>

③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한국환경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료보호 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81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 5. 30., 2019. 11. 29., 2024. 4. 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료보호 신청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17. 5. 30.>

[시행일: 2025. 1. 1.] 제57조

제58조(보호자료의 관리)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협회의 장은 관리대장의 비치, 관리자의 지정 등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보호자료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보호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30.>

제58조(보호자료의 관리)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한국환경공단은 관리대장의 비치, 관리자의 지정 등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보호자료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보호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30., 2024. 4. 9.>

[시행일: 2025. 1. 1.] 제58조

제59조(수수료) ① 법 제54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제60조(보고) ①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및 협회의 장이 영 제2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 및 보고일 등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17. 12. 27.>

②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또는 협회의 장은 영 제22조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와 관련하여 매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2월 10일까지 제1항에 따른 전년도 보고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종합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7.>

제61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 4. 1.>

1. 제19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및 별표 3의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별 수량 기준: 2021년 6월 30일
2. 제19조의2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2021년 6월 30일
3. 제19조의3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점검: 2021년 6월 30일
4. 제19조의4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2021년 6월 30일
5.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2015년 1월 1일

부칙 <제1084호,2024. 4. 9.>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4항 및 별표 2 제3호가목9)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제8조 관련)

1. 취급시설 적정 유지·관리

- 가.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서 가까운 거리 내에 비상시를 대비하여 샤워시설 또는 세안시설을 갖추고, 정상 작동하도록 유지할 것
- 나. 물과 반응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보관·저장시설 주변에 설치된 방류벽, 집수시설(集水施設) 및 집수조 등에 물이 피어 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폭발 위험이 높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할 때 사용되는 장비는 반드시 접지(接地)하고,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점검할 것. 다만, 화학사고 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라. 유해화학물질 용기는 온도, 압력, 습도와 같은 대기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고, 파손 또는 부식되거나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
- 마. 앞서 저장한 화학물질과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미리 탱크로리, 저장탱크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폐액(廢液)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할 것
- 바.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고 남은 빈 용기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할 것

2. 화학사고 예방 및 응급조치

- 가.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중에 음식물, 음료 등을 섭취하지 말 것
- 나. 유해화학물질은 식료품, 사료, 의약품, 음식과 함께 혼합 보관하거나 운반, 접촉하지 말 것
- 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콘택트렌즈를 착용하지 말 것. 다만, 적절한 보안경을 착용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라. 물과 반응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도록 해당 물질을 관리할 것
- 마. 화재, 폭발 등 위험성이 높은 유해화학물질은 가연성 물질과 접촉되지 않도록 하고, 열·스파크·불꽃 등의 점화원(點火源)을 제거할 것
- 바.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사용하는 장소 주변이나 하역하는 동안 차량 안 또는 주변에서 흡연을 하지 말 것
- 사. 용접·용단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티의 비산(飛散)거리 이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지 말 것
- 아. 유해화학물질이 묻어 있는 표면에 용접을 하지 말 것. 다만, 화기 작업허가 등 안전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자. 열, 스파크 등 점화원과 접촉 시 화재, 폭발 등 위험성이 높은 유해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용접·용단작업을 실시하지 말 것. 다만, 부득이 용접·용단 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용기 내를 불활성가스로 대체하거나 중화, 세척 등으로 안전성을 확인한 이후에 실시할 수 있다.

차. 밀폐된 공간에서는 공기 중에 가연성, 폭발성 기체나 유독한 가스의 존재여부 및 산소 결핍 여부를 점검한 이후에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할 것

카. 고체 유해화학물질을 호퍼(hopper: 밑에 깔대기 출구가 있는 큰 통)나 컨베이어, 용기 등에 낙하시킬 때에는 낙하거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 이 경우 고체 유해물질의 낙하로 인해 분진이 발생하는 때에는 분진을 포집(捕執)하기 위한 분진 포집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타. 고체 유해화학물질을 용기에 담아 이동할 때에는 용기 높이의 90% 이상을 담지 않도록 할 것

파. 인화성을 지닌 유해화학물질은 그 물질이 반응하지 않는 액체나 공기 분위기에서 취급할 것

하. 유해화학물질을 계량하고 공정에 투입할 때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기를 포집하기 위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작업 시 상시 가동할 것

거. 용기에 들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공정에 모두 투입한 경우에는 용기에서 증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밀봉(密封)하여 두거나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된 곳에 둘 것

너. 유해화학물질이 발생하는 반응, 추출, 교반(회저어 섞음), 혼합, 분쇄, 선별, 여과, 탈수, 건조 등의 공정은 밀폐 또는 격리된 상태로 이루어지도록 할 것

더. 유해화학물질이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된 유해화학물질이 넓은 지역으로 퍼지지 않도록 차단하는 조치를 할 것

러. 유해화학물질이 유출·누출된 경우에는 다른 사람과 차량의 접근을 통제할 것

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할 것

3. 보관·저장

가. 종류가 다른 화학물질을 같은 보관시설 안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간의 반응성을 고려하여 칸막이나 바닥의 구획선 등으로 구분하여 상호간에 필요한 간격을 둘 것

나. 폭발성 물질과 같이 불안정한 물질은 폭발 반응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보관할 것

다. 고체 유해화학물질은 밀폐한 상태로 보관하고 액체, 기체인 경우에는 완전히 밀폐 상태로 보관할 것

4. 상자·하차 및 용기·포장

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저장·적재·입출고 중에는 내용물이 환경 중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포장할 것

나. 뚜껑을 포함한 용기는 유해화학물질의 반응 등으로 인한 변형 및 손상이 없는

재질이어야 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성질에 따라 적당한 재질, 두께 및 구조를 갖추

다. 운반 도중 파손되거나 유출·누출 위험이 있는 용기를 사용하지 말 것. 다만, 유해화학물질의 성질상 유리 등 파손 우려가 있는 용기를 불가피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운송 시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하고 포장을 견고히 하여 운반 도중 파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 용기는 취급자가 사용 후 다시 잠글 수 있는 밀봉 뚜껑을 갖추

5. 운반

가.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운반하는 경우 해당 물질이 유출되거나 누출되었을 때 상호반응을 일으켜 화재, 유독가스 생성, 발열 등의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과 함께 보관·운반하지 말 것

나. 차량을 이용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할 때에는 규정된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200킬로미터 이상(고속국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340킬로미터 이상)의 거리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다른 운전자를 동승시키거나 운행 중에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취할 것

다. 버스, 철도, 지하철 등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지 말 것

라. 유해화학물질을 우편 또는 택배로 보내지 말 것.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폭발성, 인화성이 있거나 급성 흡입독성이 높은 물질로서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은 제외한다)을 화학물질안전원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택배로 보내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1)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

2)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거나, 유해화학물질 시약판매업 신고를 한 사업장이 판매의 목적이 아닌 연구개발, 시범사용 등을 위해 제조 또는 수입한 견본품

마. 차량의 운전석이나 승객이 타는 자리 옆에 유해화학물질을 두지 말고 반드시 지정된 화물칸으로 이송하고 화물칸은 덮개를 덮을 것

바. 유해화학물질을 이송할 때에는 화학물질의 증기, 가스가 대기 중으로 누출되지 않도록 할 것

사.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도중에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화재, 폭발, 유출·누출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를 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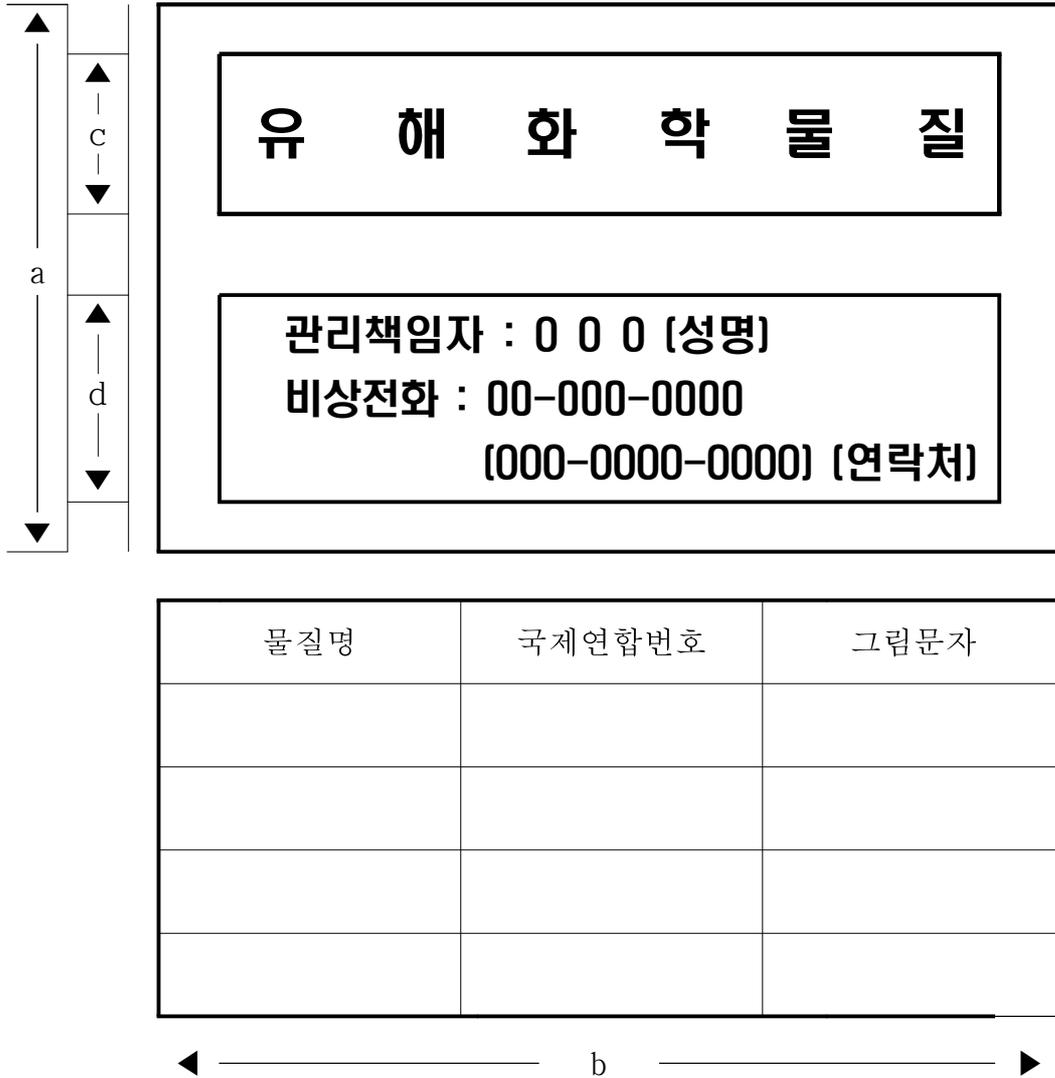
아. 고체 유해화학물질을 이송 시에는 비산하는 분진이 없도록 할 것

비고: 위 기준 외에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4. 4. 9.>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제12조제2항 관련)

1. 유해화학물질의 보관·저장시설 또는 진열·보관 장소에 표시하는 경우
가. 양식



나. 양식크기: $a=50\text{cm}$ 이상, $b=(3/2)a$, $c=(1/4)a$, $d=(1/4)a$

다. 글자크기: 유해화학물질 등 글자의 높이는 테두리 전체 높이의 65%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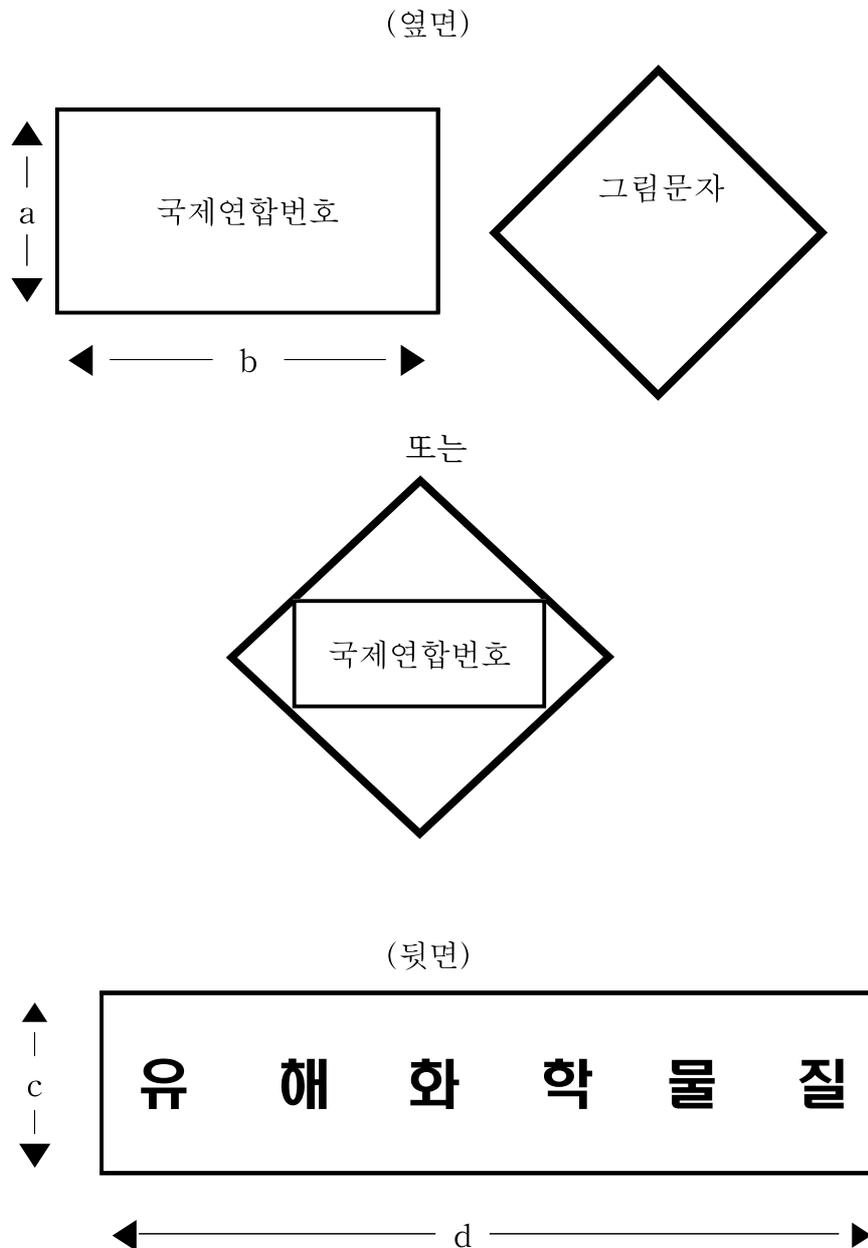
라. 색상: 바탕은 흰색, 테두리는 검정색, 글자는 빨간색으로 하고, 관리책임자와 비상전화의 글자는 검정색으로 해야 한다.

마. 표시위치: 유해화학물질의 보관·저장시설 또는 진열·보관 장소의 입구 또는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해야 한다.

2. 운반차량(컨테이너, 이동식 탱크로리 등을 포함한다)에 표시하는 경우

가. 1톤 초과 운반차량의 경우

1) 양식



2) 양식크기

가) 1톤 초과 4톤 이하 운반차량의 경우: 옆면의 그림문자 네 변의 길이는 각각 12cm 이상, a=10cm 이상, b=25cm 이상, c=12cm 이상, d=50cm 이상으로 한다.

나) 4톤 초과 운반차량의 경우: 옆면의 그림문자 네 변의 길이는 각각 20cm 이상, a=10cm 이상, b=25cm 이상, c=20~30cm, d=80~100cm로 한다.

3) 글자크기: 국제연합번호의 글자 높이는 테두리 전체 높이의 65%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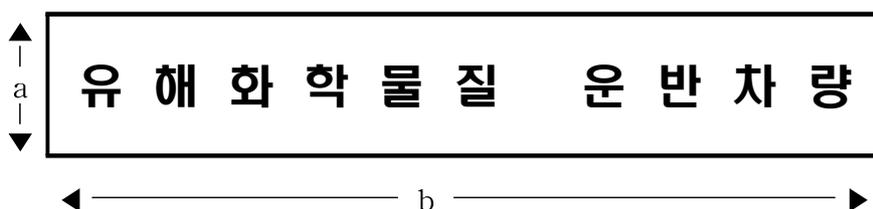
- 4) 그림문자: 국제연합(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 기준」(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RTDG),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6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항공안전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험물취급의 절차 및 방법 등 위험물 운송과 관련된 기준에 따른 운송그림문자(이하 “운송그림문자”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림문자와 관련된 유해성·위험성이 두 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7)의 유해성·위험성 우선순위가 높은 두 개의 물질에 대해서만 국제연합번호 및 그림문자를 표시할 수 있다.
- 5) 색상: 테두리는 검정색으로, 글자(그림문자는 제외한다)는 검정색으로 하고, 뒷면의 유해화학물질 글자는 빨간색으로, 국제연합번호의 바탕은 주황색으로 해야 한다.
- 6) 표시위치: 양 옆면과 뒷면의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를 부착 또는 각인해야 한다.
- 7) 유해성·위험성 우선순위
- 가) 방사성 물질
 - 나) 폭발성 물질 및 제품
 - 다) 가스류
 - 라) 인화성 액체 중 둔감한 액체 화약류
 - 마) 자체 반응성 물질 및 둔감한 고체 화약류
 - 바) 자연 발화성 물질
 - 사) 유기과산화물
 - 아) 독성물질 또는 인화성 액체류

비고

1톤 초과 1.5톤 이하 운반차량의 경우 제2호가목의 표시방법을 이행하는 데 물리적인 공간이 부족할 때에는 제2호나목의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나. 1톤 이하 운반차량의 경우

1) 양식



2) 양식크기: a=10~20cm, b=30~80cm 이어야 한다.

비고

국외로 수출하거나 국내로 수입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컨테이너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연합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 기준」에 따른 표시를 할 수 있다.

3.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하는 경우

가. 일반 작성 원칙

- 1) 표시 방법은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명칭은 물질명(또는 일반명) 및 고유번호(또는 CAS번호)를 기재한다. 혼합물인 경우에는 제품이름(또는 혼합물의 이름) 및 유해화학물질의 함량(%)을 기재한다.
- 3) 두 가지 이상의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모든 그림문자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 가) “해골과 X자형 뼈” 그림문자와 “감탄부호(!)” 그림문자가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골과 X자형 뼈”의 그림문자만을 표시한다.
 - 나) 부식성 그림문자와 피부자극성 또는 눈자극성 그림문자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식성 그림문자만을 표시한다.
 - 다) 호흡기과민성 그림문자와 피부과민성, 피부자극성 또는 눈자극성 그림문자가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호흡기과민성 그림문자만을 표시한다.
- 4) 신호어는 “위험” 또는 “경고”를 표시하되,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험”만을 표시한다.
- 5) 유해위험문구는 모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미가 중복되는 문구는 생략이 가능하며, 유사한 유해위험문구와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 6) 예방조치문구는 모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복되는 예방조치문구를 생략하거나 유사한 예방조치문구와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예방조치문구가 7개 이상인 경우 가장 엄격한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하여 6개만 표시할 수 있다.
- 7) 유해위험문구와 예방조치문구는 해당 문구를 표시하되 코드번호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 8) 공급자정보에는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명칭 및 연락처 등을 표시한다.
- 9) 그 밖에 표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 양식 및 규격

1) 양식

	<p>명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호어 : ○ 유해위험문구: ○ 예방조치문구 : ○ 공급자 정보 :
---	--

2) 규격

가) 용기의 용량별 크기

용기·포장의 용량	크기
5ℓ 미만	용기·내부 포장의 상하면적을 제외한 전체 표면적의 5% 이상
5ℓ 이상 50ℓ 미만	90 cm ² 이상
50ℓ 이상 200ℓ 미만	180 cm ² 이상
200ℓ 이상 500ℓ 미만	300 cm ² 이상
500ℓ 이상	450 cm ² 이상

나) 그림문자의 크기는 전체 크기의 4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최소한 0.5cm² 이상이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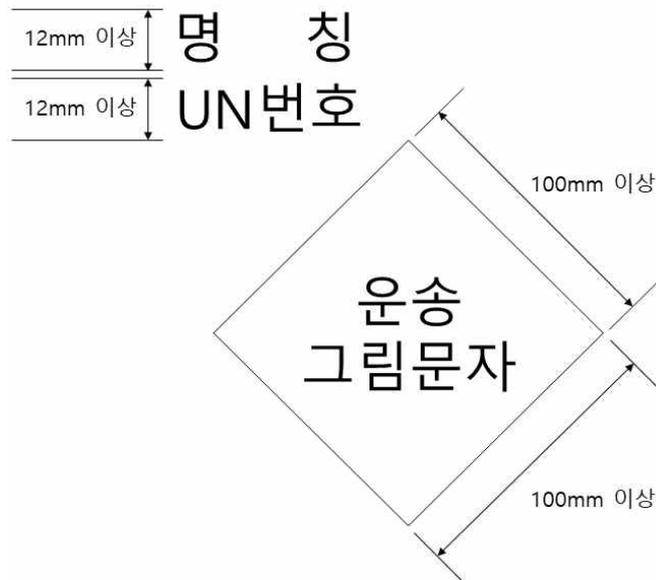
다) 유해화학물질의 내용량이 100g 이하 또는 100ml 이하인 경우에는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및 공급자정보만을 표시할 수 있다.

라) 전체 크기의 바탕은 흰색 또는 용기·포장 자체의 표면색으로 하고, 글자(그림문자는 제외한다)와 테두리는 검정색으로 한다. 다만, 용기·포장 자체의 표면색이 검정색에 가까운 경우에는 글자와 테두리를 바탕색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해야 한다.

마) 1ℓ 미만의 소량 용기로서 용기에 직접 인쇄하려는 경우에는 그 용기 표면의 색상이 두 가지 이하로 착색되어 있는 경우만 용기에 주로 사용된 색상(검정색계통은 제외한다)을 그림문자의 바탕색으로 할 수 있다.

다. 운반을 위한 외부용기의 양식 및 규격

1) 양식



2) 규격

- 가) 그림문자의 크기는 100mm×100mm 이상의 마름모꼴로 한다.
- 나) 명칭 및 UN번호의 문자높이는 12mm 이상으로 하되, 용량이 30ℓ 이하 또는 최대 순질량이 30kg 이하인 포장화물 및 수용량이 60ℓ 이하인 실린더의 경우에는 6mm 이상의 높이여야 하며, 용량이 5ℓ 이하 또는 최대 순질량이 5kg 이하인 포장화물인 경우에는 적절한 높이여야 한다.
- 다) 명칭을 기재할 때 고유번호(또는 CAS번호)와 유해화학물질의 함량(혼합물인 경우)은 제외할 수 있다.

라. 표시방법

1) 이중용기(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외부용기

외부용기에는 나목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다만, 운반을 위한 외부용기 등 필요한 경우에는 다목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나) 내부용기

내부용기에는 나목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다만, 운반을 위한 외부용기 등 필요한 경우에는 그림문자를 운송그림문자로 대체할 수 있다.

비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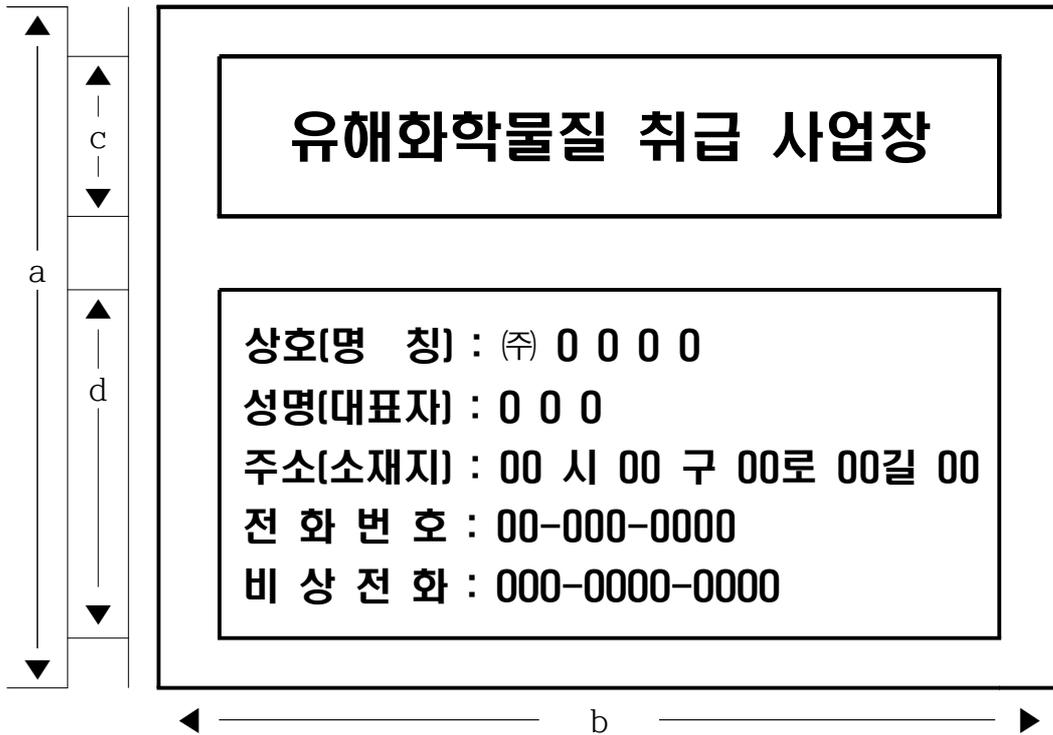
- 가) “이중용기”란 1개의 용기 안에 1개 이상의 용기가 들어 있는 용기를 말한다.
- 나) “외부용기”란 이중용기에서 가장 바깥쪽의 용기를 말한다.
- 다) “내부용기”란 운반을 위하여 외부용기가 필요한 용기로 외부용기 내부

의 모든 용기를 말한다.

2) 단일용기(이중용기 외의 용기를 말한다)

용기에는 나목에 따라 표기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운송그림문자와 조합하여 하나의 표시로 나타낼 수 있으며, 운송그림문자와 같은 유해성을 나타내는 그림문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 표시하는 경우가. 양식



나. 양식크기: $a=50\text{cm}$ 이상, $b=(3/2)a$, $c=(1/4)a$, $d=(1/2)a$

다. 글자크기: 유해화학물질 등 글자의 높이는 테두리 전체 높이의 65% 이상이 되어야 한다.

라. 색상: 바탕은 흰색으로, 테두리는 검정색으로, 글자는 빨간색으로, 상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비상전화의 글자는 검정색으로 해야 한다.

마. 표시위치: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출입구, 사업장의 부지경계선 등 외부로부터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출입 또는 접근할 수 있는 장소가 여러 방향일 때에는 그 장소마다 게시해야 한다.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1. 4. 1.>

유해화학물질 표시를 위한 유해성 항목(제12조제3항 관련)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항목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해야 한다.

1. 화학물질의 유해성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2. 물리적 위험성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가. “폭발성 물질”이란 자체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주위환경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온도, 압력과 속도를 가진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액체물질이나 혼합물을 말한다.

나. “인화성 가스”란 섭씨 20도, 표준압력 101.3킬로파스칼(kPa)에서 공기와 혼합하여 인화범위에 있는 가스와 섭씨 54도 이하 공기 중에서 자연발화하는 가스를 말한다.

다. “에어로졸”이란 재충전이 불가능한 금속·유리 또는 플라스틱 용기에 압축 가스·액화가스 또는 용해가스를 충전하고 내용물을 가스에 현탁시킨 고체나 액상 입자로, 액상 또는 가스상에서 폼·페이스트·분말상으로 배출하는 분사장치를 갖춘 것을 말한다.

라. “산화성 가스”란 일반적으로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공기와 비교하여 다른 물질의 연소를 더 잘 일으키거나 연소를 돕는 가스를 말한다.

마. “고압가스”란 200킬로파스칼(kPa) 이상의 게이지 압력 상태로 용기에 충전되어 있는 가스 또는 액화되거나 냉동액화된 가스를 말한다.

바. “인화성 액체”란 인화점이 섭씨 60도 이하인 액체를 말한다.

사. “인화성 고체”란 쉽게 연소되는 고체(분말, 과립상 또는 페이스트 형태의 물질로 성냥불씨와 같은 점화원을 잠깐만 접촉하여도 쉽게 점화되거나, 화염이 빠르게 확산되는 물질을 말한다)나 마찰에 의해 화재를 일으키거나 화재를 돕는 고체를 말한다.

아. “자기반응성(自己反應性) 물질 및 혼합물”이란 열적(熱的)으로 불안정하여 산소의 공급이 없어도 강하게 발열 분해하기 쉬운 액체·고체물질이나 혼합물을 말한다.

자. “자연발화성 액체”란 적은 양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안에 발화할 수 있는 액체를 말한다.

차. “자연 발화성 고체”란 적은 양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안에 발화할 수 있는 고체를 말한다.

카. “자기발열성(自己發熱性) 물질 및 혼합물”이란 자연발화성 물질이 아니면

서 주위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고 공기와 반응하여 스스로 발열하는 고체·액체물질이나 혼합물을 말한다.

다. “물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이란 물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자연발화성이 되거나 인화성 가스를 위험한 수준의 양으로 발생하는 고체·액체물질이나 혼합물을 말한다.

파. “산화성 액체”란 그 자체로는 연소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거나 연소를 돕는 액체를 말한다.

하. “산화성 고체”란 그 자체로는 연소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거나 연소를 돕는 고체를 말한다.

거. “유기과산화물”이란 1개 또는 2개의 수소 원자가 유기라디칼에 의하여 치환된 과산화수소의 유도체인 2개의 -O-O- 구조를 갖는 액체나 고체 유기물질을 말한다.

너. “금속부식성 물질”이란 화학적인 작용으로 금속을 손상 또는 파괴시키는 물질이나 혼합물을 말한다.

3. 건강 유해성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가. “급성독성 물질”이란 입이나 피부를 통하여 1회 또는 24시간 이내에 수 회로 나누어 투여하거나 4시간 동안 흡입노출시켰을 때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나.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이란 최대 4시간 동안 접촉시켰을 때 비가역적(非可逆的)인 피부손상을 일으키는 물질(피부 부식성 물질) 또는 회복 가능한 피부손상을 일으키는 물질(피부 자극성 물질)을 말한다.

다. “심한 눈 손상 또는 눈 자극성 물질”이란 눈 앞쪽 표면에 접촉시켰을 때 21일 이내에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눈 조직 손상을 일으키거나 심한 물리적 시력감퇴를 일으키는 물질(심한 눈 손상 물질) 또는 21일 이내에 완전히 회복 가능한 어떤 변화를 눈에 일으키는 물질(눈 자극성 물질)을 말한다.

라. “호흡기 또는 피부 과민성 물질”이란 호흡을 통하여 노출되어 기도에서 과민 반응을 일으키거나 피부 접촉을 통하여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마. “생식세포 변이원성(變異原性) 물질”이란 자손에게 유전될 수 있는 사람의 생식세포에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바. “발암성 물질”이란 암을 일으키거나 암의 발생을 증가시키는 물질을 말한다.

사. “생식독성 물질”이란 생식 기능, 생식 능력 또는 태아 발육에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아. “특정 표적장기(標的臟器) 독성 물질(1회 노출)”이란 1회 노출에 의하여 특

이한 비치사적(非致死的: 죽음에 이르지 않는 정도) 특정 표적장기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자. “특정 표적장기(標的臟器) 독성 물질(반복 노출)”이란 반복 노출에 의하여 특정 표적장기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차. “흡인 유해성 물질”이란 액체나 고체 화학물질이 입이나 코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구토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기관(氣管) 및 더 깊은 호흡기관(呼吸器官)으로 유입되어 화학폐렴, 다양한 폐 손상이나 사망과 같은 심각한 급성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4. 환경 유해성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가. “수생환경 유해성 물질”이란 단기간 또는 장기간 노출에 의하여 물 속에 사는 수생생물과 수생생태계에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나. “오존층 유해성 물질”이란 몬트리올 의정서의 부속서에 등재된 모든 관리 대상 물질을 말한다.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신설 2021. 4. 1.>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제19조제2항제2호 및 제8항 관련)

1. 사고대비물질별 수량 기준

(단위: 톤)

번호	사고대비물질[영문명 및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하위 규정수량	상위 규정수량
1	포르말린 또는 포름알데히드(폼알데하이드)[Formalin; Formaldehyde ; 50-00-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400
2	메틸히드라진(메틸하이드라진)[Methylhydrazine ; 60-34-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1	20
3	포름산(폼산)[Formic acid ; 64-18-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40
4	메틸알코올[Methylalcohol ; 67-56-1] 및 이를 8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400
5	벤젠[Benzene ; 71-43-2] 및 이를 8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20
6	염화메틸[Methyl chloride ; 74-87-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20
7	메틸아민[Methylamine ; 74-89-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20
8	시아나화수소(사이안화수소)[Hydrogen cyanide ; 74-90-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6	3
9	염화비닐(염화 바이닐)[Vinyl chloride ; 75-01-4]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400
10	이황화탄소[Carbon disulfide ; 75-15-0]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20
11	산화에틸렌[Ethylene oxide ; 75-21-8]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20
12	포스겐[Phosgene ; 75-4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13	트리메틸아민[Trimethylamine ; 75-50-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20
14	산화 프로필렌[Propylene oxide ; 75-56-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20

15	메틸에틸케톤[Methyl ethyl ketone ; 78-93-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400
16	메틸비닐케톤[Methyl vinyl ketone ; 78-94-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1	400
17	아크릴산[Acrylic acid ; 79-10-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40
18	메틸아크릴레이트[Methyl acrylate ; 96-33-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400
19	니트로벤젠(나이트로벤젠)[Nitrobenzene ; 98-95-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40
20	4-니트로톨루엔(4-나이트로톨루엔)[4-Nitrotoluene ; 99-99-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40
21	벤질클로라이드[Benzyl chloride ; 100-44-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	20
22	아크롤레인[Acrolein ; 107-02-8]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1	20
23	알릴클로라이드[Allyl chloride ; 107-05-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20
24	아크릴로니트릴(아크릴로나이트릴)[Acrylonitrile ; 107-13-1]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20
25	에틸렌디아민(에틸렌다이아민)[Ethylenediamine ; 107-15-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20
26	알릴알코올[Allyl alcohol ; 107-18-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40
27	m-크레졸(m-크레솔)[m-Cresol ; 108-39-4]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8	40
28	톨루엔[Toluene ; 108-88-3] 및 이를 8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400
29	페놀[Phenol ; 108-95-2]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8	40
30	n-부틸아민(n-뷰틸아민)[n-Butylamine ; 109-73-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400
31	트리에틸아민(트라이에틸아민)[Triethylamine ; 121-44-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20

32	아세트산에틸[Ethyl acetate ; 141-78-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400
33	시안화나트륨(사이안화나트륨)[Sodium cyanide ; 143-33-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베를린청(Ferric ferrocyanide)·황혈염(Potassium ferrocyanide)·적혈염(Potassium ferri-cyanide) 및 그 중 하나를 함유한 혼합물질은 제외한다.	2	20
34	에틸렌이민[Ethylenimine ; 151-56-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	40
35	톨루엔-2,4-다이소시아네이트 [Toluene-2,4-diisocyanate(2,4-TDI) ; 584-84-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40
36	일산화탄소[Carbon monoxide ; 630-08-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20
37	아크릴로일클로라이드[Acryloyl chloride ; 814-68-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	40
38	인화아연[Zinc phosphide ; 1314-84-7]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4	20
39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Methyl ethyl ketone peroxide ; 1338-23-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4	20
40	다이소시아산이소포론(다이아이소시아산 아이소포론)[Isophorone diisocyanate ; 4098-71-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4	20
41	나트륨[Sodium ; 7440-23-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0.4	2
42	염화수소[Hydrogen chloride ; 7647-01-0]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40
		5*	400*
43	플루오르화수소(플루오린화 수소)[Hydrogen fluoride ; 7664-39-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4	2
		4*	20*
44	암모니아[Ammonia ; 7664-41-7]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40
		20*	400*
45	황산[Sulfuric acid ; 7664-93-9]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400

46	질산[Nitric acid ; 7697-37-2]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400
47	삼염화인[Phosphorus trichloride ; 7719-12-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20
48	불소[Fluorine ; 7782-41-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0.4	2
49	염소[Chlorine ; 7782-50-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4	20
50	황화수소[Hydrogen sulfide ; 7783-06-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0.4	2
51	아르신 또는 삼수소화비소[Arsine; Arsenic trihydride ; 7784-42-1]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2	1
52	클로로술폰산(클로로선폰산)[Chlorosulfonic acid ; 7790-94-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4	20
53	포스핀[Phosphine ; 7803-51-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2	1
54	옥시염화인[Phosphorus oxychloride ; 10025-87-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40
55	이산화염소[Chlorine dioxide ; 10049-04-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	40
56	디보란(다이보레인)[Diborane ; 19287-45-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57	산화질소[Nitric oxide ; 10102-43-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58	니트로메탄(나이트로메테인)[Nitromethane ; 75-52-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40
59	질산암모늄[Ammonium nitrate ; 6484-52-2] 및 이를 33%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60
60	헥사민[Hexamine ; 100-97-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2	60
61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 ; 7722-84-1] 및 이를 35%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60

62	염소산칼륨[Potassium chlorate ; 3811-04-9] 및 이를 98%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10
63	질산칼륨[Potassium nitrate ; 7757-79-1] 및 이를 98%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60
64	과염소산칼륨[Potassium perchlorate ; 7778-74-7] 및 이를 98%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10
65	과망간산칼륨[Potassium permanganate ; 7722-64-7] 및 이를 98%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200
66	염소산나트륨[Sodium chlorate ; 7775-09-9] 및 이를 98%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10
67	질산나트륨[Sodium nitrate ; 7631-99-4] 및 이를 98%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60
68	사린[O-Isopropyl methyl phosphonofluoridate ; 107-44-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2	1
69	염화시아안[Cyanogen chloride ; 506-77-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70	니켈카르보닐[Nickel carbonyl ; 13463-39-3]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71	모노게르만 또는 사수소화게르마늄[(Germane ; Germanium tetrahydride ; 7782-65-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2	1
72	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Tetrafluoroethylene ; 116-14-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0.2	1
73	트리플루오로보란(트라이 플루오로 보란)[Trifluoroborane ; 7637-07-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4	2
74	트리클로로붕소[Boron trichloride ; 10294-34-5]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0.4	2
75	헥사플루오로-1,3-부타디엔(헥사플루오로-1,3-뷰타다이엔) [Hexafluoro-1,3-butadiene ; 685-63-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0.2	1
76	브롬[Bromine ; 7726-95-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77	세렌화수소(셀레늄화 수소)[Hydrogen selenide ; 7783-07-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2	1
78	이소프렌(아이소프렌)[Isoprene ; 78-79-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40
79	1,1-디클로로에틸렌(1,1-다이클로로에틸렌) [1,1-Dichloroethylene ; 75-35-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80	헥사메틸디실록산[Hexamethyl disiloxane ; 107-46-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81	펜타카르보닐철[Pentacarbonyl iron ; 13463-40-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82	오불화브롬[Bromine pentafluoride ; 7789-30-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83	염화티오닐(염화싸이오닐)[Thionyl chloride ; 7719-09-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84	사염화타이타늄(사염화타이타늄)[Titanium tetrachloride ; 7550-45-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85	클로로피크린[Chloropicrin ; 76-06-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86	비닐에틸에테르[Vinyl ethyl ether ; 109-92-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40
87	실란(실레인)[Silane ; 7803-62-5]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0.2	1
88	디실란(다이실레인)[Disilane ; 1590-87-0]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0.2	1
89	디클로로실란(다이클로로실레인)[Dichlorosilane ; 4109-96-0]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0.2	1
90	트리클로로실란(트라이클로로실레인) [Trichlorosilane ; 10025-78-2]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91	메틸디클로로실란(메틸다이클로로실레인) [Methyldichlorosilane ; 75-54-7]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92	메틸트리클로로실란(메틸트라이클로로실레인)	0.3	1.5

	[Methyltrichlorosilane ; 75-79-6]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93	트리클로로비닐실란[Trichlorovinylsilane ; 75-94-5]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94	에틸트리클로로실란[Trichloroethylsilane ; 115-21-9]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95	테트라메틸실란(테트라메틸 실레인) [Tetramethylsilane ; 75-76-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96	테트라클로로실리콘(테트라클로로실리콘)[Silicon Tetrachloride; 10026-04-7]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97	테트라플루오로실리콘[Silicon tetrafluoride ; 7783-61-1]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2	1

2.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수량 기준(각 물질별 하위 규정수량과 상위 규정수량 기준을 말한다)은 환경부장관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비고

1. 규정수량은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사용시설과 보관·저장시설에서 최대로 체류(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할 수 있는 양을 말한다.
2. 제1호의 규정수량에도 불구하고 42번, 43번 및 44번의 물질은 상온·상압조건에서 성상이 액체인 경우 *표시된 값을 규정수량으로 한다.
3. 규정수량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2. 1. 10.>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내용 및 방법(제19조제3항 관련)

1. 기본정보

가. 사업장 일반정보

- 1) 사업장 일반정보는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1군·2군 사업장 해당 여부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2) 취급시설 개요는 사업장 전체를 기준으로 장치·설비의 종류 및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명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나. 유해화학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 정보

- 1) 유해화학물질의 목록 및 명세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명, 유해화학물질별 물리적·화학적 성질 및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및 환경 유해성 분류기준에 따른 구분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2) 대표 유해성 정보는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중 유해성이 가장 큰 대표 물질 2종에 대한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 정보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다. 취급시설의 입지정보

- 1) 취급시설의 입지정보는 전체배치도, 설비배치도 및 주변 환경정보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 2) 전체배치도는 사업장 내 건물 및 설비의 위치, 건물 간 거리, 단위공정 또는 단위공장 배치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3) 설비배치도는 단위공정 또는 단위공장별로 각 설비의 위치, 주요 설비의 설치 높이, 각 설비 간 거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전체 배치도상의 위치가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 4) 주변 환경정보는 사업장 인근 지역 시설물의 위치도·명세, 주민분포 현황 및 자연보호구역 지정 현황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2. 시설정보

가. 공정안전정보

- 1) 공정안전정보는 공정개요, 공정도면, 장치·설비의 목록 및 명세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 2) 공정개요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절차·방법의 흐름에 따라 공정설명 자료를 작성한다.
- 3) 공정도면에는 주요 동력기계, 장치 및 설비의 표시 및 명칭, 주요 계측장비 및 제어 설비, 물질 및 열에너지 수지, 운전온도 및 운전압력 등의 사항들이

포함된 공정흐름도(Process Flow Diagram, PFD)를 작성하고, 단위공정 또는 단위설비들이 배관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정배관계장도(Piping & Instrument Diagram, P&ID)를 추가로 작성한다.

- 4) 장치·설비의 목록 및 명세는 단위공정별로 장치 및 설비의 명칭과 용량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나. 안전장치 현황

- 1) 안전장치 현황은 확산방지 설비 현황 및 배치도, 고정식 유해감지시설 명세 및 배치도, 안전밸브 및 과열판 명세, 배출물질 처리시설 현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2) 확산방지 설비 현황 및 배치도는 유해화학물질 누출 시 누출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방류벽 및 트렌치 등 시설의 목록, 용량 및 배치도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 3) 고정식 유해감지시설 명세 및 배치도는 가스감지기, 누액감지기 등의 고정식 유해감지시설의 종류와 설치위치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 4) 안전밸브 및 과열판 명세는 단위공정별로 적정 용량 및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 5) 배출물질 처리시설 현황은 스크러버(scrubber: 세정기) 및 플레어 스택(flare stack: 배출가스연소탑) 등 배출물질을 처리하는 시설이 적정한 성능과 용량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3. 장외 평가정보

가. 사고시나리오 선정

취급시설의 용량 및 취급시설별 취급량 등을 고려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사고시나리오 작성대상 설비를 선정하여 예비위험 분석기법을 적용한 공정위험성 분석을 하고, 사고시나리오에 따른 대상설비와 사업장의 총괄영향범위를 산정하는 내용 등을 작성한다.

나. 사업장 주변지역 사고영향평가

사고시나리오에 따른 총괄영향범위 내에 있는 주민 수, 공작물·농작물 및 환경매체 목록 등 현황 및 사고영향의 분석·평가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다. 위험도 분석

사고시나리오별 사고 영향과 사고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분석한 후 작성한다.

4. 사전관리방침

가. 안전관리계획

- 1) 안전관리계획은 안전관리운영계획, 안전관리계획의 실행 및 변경관리, 화

- 학사고 대비 교육·훈련계획 및 자체점검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2) 안전관리운영계획은 위험도를 줄이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안전관리 방침과 대책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3) 안전관리계획의 실행 및 변경관리는 수립된 계획의 주기적인 검토 및 개선·보완, 변경사항 발생 시 현행화를 위한 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4) 화학사고 대비 교육·훈련계획은 화재·폭발, 독성물질 누출, 환경오염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종류, 대상 및 횟수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 5) 자체점검계획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보완하기 위해 실시하는 점검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나. 비상대응체계

- 1) 비상대응체계는 비상연락체계와 비상대응조직도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 2) 비상연락체계는 화학사고 발생 시 사고 대응 담당자, 공동 대응을 위해 연락 가능한 인근 사업장, 유관기관의 목록 및 신고·연락 체계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3) 비상대응조직도는 사고 대응·수습·복구 단계별 대응 부서별 편성인원과 임무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5. 내부 비상대응계획

가. 사고대응 및 응급조치계획

- 1) 사고대응 및 응급조치계획은 화학사고 발생 시 가동중지 권한 및 절차, 방재 인력·장비·물품 운용계획, 사업장 내부 경보전달체계 및 응급조치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2) 방재 인력·장비·물품 운용계획은 화학사고 발생 시 투입되는 방재인력 및 장비 현황, 개인보호구 등의 물품 보유현황, 방재장비·물품 배치도 및 관리·유지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3) 사업장 내부 경보전달체계는 경보시설의 종류·유지관리방법 및 경보전달 방법·담당자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 4) 응급조치계획은 저장, 운반(탱크로리)·이송(배관), 보관시설, 반응·교반 등 대표적인 유해화학물질 취급공정별로 화학사고 발생 시 자동 차단 또는 단계별 차단, 확산방지 및 2차 오염 방지를 위한 대책과 비상대피계획 및 응급의료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나. 화학사고 사후조치

- 1) 화학사고 사후조치는 사고원인조사 및 재발방지계획과 사고복구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2) 사고원인조사 및 재발방지계획은 사고조사팀의 구성·임무, 사고조사보고

서의 작성 항목·방법 및 개선대책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3) 사고복구계획은 사고현장을 복구하기 위한 조직·임무, 환경책임보험 가입이력 및 가입여부, 환경복원전문업체의 활용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6. 외부 비상대응계획

가. 지역사회 공조계획

화학사고의 예방·대비·대응·수습·복구를 위한 정보 공유, 지역사회와의 소통, 화학사고 발생 시 공동대응 등 지역사회·지역비상대응기관·인근사업장 등과의 공조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나. 주민보호 및 대피계획

1) 주민보호 및 대피계획은 주민에 대한 대피경보 및 전달체계, 사고 발생 시 주민대피행동요령, 응급의료계획 및 주민대피 장소·방법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2) 화학사고 발생 시 대피경보 및 전달체계는 경보시설의 종류 및 유지관리 방법, 경보전달 방법·담당자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경보전달체계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3)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대피행동요령은 사고유형 및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에 따른 대피 시 유의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4) 응급의료계획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의 목록 및 비상연락망, 사업장과의 거리, 이동경로, 이동시간, 수용가능 병상, 환자후송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5) 주민대피 장소·방법은 집결지와 대피장소를 구분하여 사업장과의 거리, 이동경로, 이동시간, 수용가능 인원, 실내·지상·지하 여부, 「재해구호법」에 따른 임시주거시설 해당 여부, 수송계획, 비상연락망 및 대피장소관리 담당자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다. 지역사회 고지계획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대상이 되는 사고시나리오별 총괄영향범위 내 주민의 목록 및 고지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2) 고지정보는 법 제23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된 내용을 주민들이 알기 쉽게 작성한다.

비고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사업장 전체 단위로 작성하며, 사업장의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화학물질안전원장이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운영단위를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단위별로 구분하여 제출할 수 있다.

2. 제1호가목1)의 1군·2군 사업장의 구분은 아래 표의 기준에 따라 구분한다.

사업장 구분	기준
가.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제19조제8항에 따른 주요취급시설이 있는 사업장
나.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대상으로서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3.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6호에 따른 외부 비상대응계획을 제외하고 작성할 수 있다.

4. 제4호나목, 제5호 및 제6호의 작성 항목을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같은 지역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와 해당 항목을 공동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할 때에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공동비상대응계획 작성·제출에 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5. 제6호에 따른 외부 비상대응계획은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활용하여 작성·제출할 수 있다.

6.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내용 및 방법·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삭제 <2021. 4. 1.>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삭제 <2021. 4. 1.>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4] 삭제 <2021. 4.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제21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각 설비는 온도·압력 등 운전조건과 유해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설비의 성능이 유지될 수 있는 구조 및 재료로 설치해야 한다.
- 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제어설비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상적인 운전조건이 유지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하고, 현장에서 직접 또는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다. 유해화학물질이 누출·유출되어 환경이나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사고예방을 위한 설비를 갖추고 사고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 라.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해당 사업장에 보관하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안전관리계획을 준수해야 한다.

2. 제조·사용시설의 경우

가. 설치기준

- 1) 유해화학물질 중독이나 질식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설비의 기능상 환기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2) 유해화학물질 체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분진, 액체 또는 기체 등 유해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적합한 배출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3) 금속부식성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는 부식이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물질에 견디는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 4) 액체나 기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은 누출·유출 여부를 조기에 인지할 수 있도록 감지·경보설비를 설치하고, 해당 물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차단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 5) 액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은 방류벽, 방지턱 등 집수설비(集水設備)를 설치해야 한다.
- 6) 유해화학물질이 사업장 주변의 하천이나 토양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차단시설 및 집수설비 등을 설치해야 한다.

7)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흡입하는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긴급 세척시설과 개인보호장구를 갖추어야 한다.

나. 관리기준

- 1) 가목2)에 따른 배출설비에서 배출된 유해화학물질은 중화, 소각 또는 폐기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환경이나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 2) 자연발화성 물질 또는 자기발열성 물질의 발화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기와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 3) 금속부식성 물질로 설비가 부식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4) 자기반응성 물질 또는 폭발성 물질의 과열이나 폭발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물질이 자체 반응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 5) 인화성 물질로 인한 화재나 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점화원이 될 수 있는 요인은 분리하여 관리하고, 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6) 대기 중으로 확산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은 그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7) 사업장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의 필요 최소한의 양만 취급해야 한다.
- 8) 그 밖에 제조·사용시설에서 유해화학물질 누출·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3. 저장·보관시설의 경우

가. 설치기준

- 1) 유해화학물질 저장·보관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설비의 기능상 환기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2) 유해화학물질 체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분진, 액체 또는 기체 등 유해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적합한 배출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3) 금속부식성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는 부식이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물질에 견디는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 4) 액체나 기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은 누출·유출 여부를 조기에 인지할 수 있도록 감지·경보설비를 설치하고, 해당 물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차단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 5) 액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 저장·보관시설은 방류벽, 방지턱 등 집수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 6) 유해화학물질이 사업장 주변의 하천이나 토양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차단시설 및 집수설비 등을 설치해야 한다.
- 7)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흡입하는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긴급 세척시설과 개인보호장구를 갖추어야 한다.
- 8) 저장설비는 그 설비의 압력이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그 압력을 최고사용압력 이하로 돌릴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9) 저장·보관시설은 바닥에 유해화학물질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나. 관리기준

- 1) 가목2)에 따른 배출설비에서 배출된 유해화학물질은 중화, 소각 또는 폐기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환경이나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 2) 자연발화성 물질 또는 자기발열성 물질의 발화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기와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 3) 금속부식성 물질로 설비가 부식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4) 자기반응성 물질 또는 폭발성 물질의 과열이나 폭발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물질이 자체 반응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 5) 인화성 물질로 인한 화재나 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점화원이 될 수 있는 요인은 분리하여 관리하고, 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6) 대기 중으로 확산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은 그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7) 사업장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의 필요 최소한의 양만 취급해야 한다.
- 8) 물리적·화학적 특성이 서로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같은 보관시설 안에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간의 반응성을 고려하여 칸막이나 바닥의 구획선 등으로 구분하여 보관해야 한다.
- 9) 그 밖에 저장·보관시설에서 유해화학물질 누출·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4. 운반시설(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용기 및 그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가. 설치기준

- 1)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은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해 설계·제작된 차량이어야 한다.
- 2) 운반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차고지는 누출·유출 사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한 곳으로 확보해야 한다.

나. 관리기준

- 1) 운반시설에 유해화학물질을 적재(積載) 또는 하역(荷役)하려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누출·유출되지 않도록 지정된 장소에서 해야 한다.
- 2) 운반과정에서 운반시설에 적재된 유해화학물질이 쏟아지지 않도록 유해화학물질 및 그 운반용기를 고정해야 한다.
- 3) 운반차량은 유해화학물질 누출·유출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안전한 곳에 주·정차해야 한다.
- 4) 그 밖에 운반시설에서 유해화학물질 누출·유출로 인한 피해를 줄이거나 피해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5. 그 밖의 시설

가. 사업장 밖에 있는 배관을 통해 유해화학물질을 이송하는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이하 "사업장 외 배관이송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 1) 배관설비는 운전조건과 유해화학물질의 성질을 고려하여 설비의 성능이 유지될 수 있는 구조 및 재료로 설치해야 한다.
- 2) 배관 및 그 지지물 등의 설비는 물리적·환경적 영향 등 외부요인으로 파손되거나 부식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설치해야 한다.
- 3) 유해화학물질 유출·누출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확산 방지 또는 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나. 그 밖에 사업장 외 배관이송시설에서 유해화학물질 누출·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비고

1.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 또는 조치 사항의 적용 대상인 경우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준 또는 조치 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준

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제6항에 따른 기준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조치 사항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보수, 시설 변경 등의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작업 종류, 작업 일정, 시설명, 공사 규모, 시공사(수급자),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명, 작업 관리자의 성명 및 연락처 등을 적은 표지를 작업 현장과 인접하여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3.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규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서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4. 미세공정이나 항만 등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특성상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거나 추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서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적용 대상과 해당 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 중 생활화학제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3. 10. 4.>

[환경부령 제774호(2018. 10. 26.) 별표 6 제2호가목5)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제27조제3항 관련)

1. 취급시설·장비 기준

- 가.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의 주차장(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 나. 폐수를 모을 수 있는 집수조가 있는 세차시설(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 다. 작업복을 탈의하고 세탁 등이 가능한 탈의시설
- 라.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서 해당 작업자가 착용할 수 있는 개수의 개인보호장구
- 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
- 바. 누출·배출된 유해화학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감지·경보장치 또는 CCTV
- 사. 차량 충돌로부터 배관이나 취급설비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충돌방지벽 등
- 아. 물질의 특성에 맞는 적정한 온도 습도 또는 압력 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계측장치
- 자. 물질의 누출·유출시 물질의 차단이 가능한 긴급 차단설비
- 차. 삭제 <2017. 12. 27.>

2. 기술인력 기준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안전기술사·화공기술사·가스기술사·대기관리기술사·수질관리기술사·폐기물처리기술사·산업위생관리기술사·표면처리기술사·위험물기능장·가스기능장 또는 표면처리기능장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 2) 산업안전·기계·화공·수질환경·대기환경·폐기물처리·위험물 또는 가

스 분야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기사·정밀화학기사·화약류제조기사·환경위해관리기사·화학분석기사·산업안전기사·가스기사·산업위생관리기사·수질환경기사·대기환경기사 또는 폐기물처리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실무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약류제조산업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폐기물처리산업기사·위험물산업기사·가스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표면처리산업기사·환경기능사·위험물기능사·가스기능사·화학분석기능사·표면처리기능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5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유독물 취급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실무 경력 7년 이상인 사람
- 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개설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종업원이 30명 미만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가) 2)에 해당하는 학력을 갖추거나 3) 또는 4)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화학 관련 학과 또는 같은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화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환경부령 제774호(2018. 10. 26.) 별표 6 제2호가목5)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비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는 가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2.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없거나 종업원이 10명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유해화학물질 사용업(종업원이 10명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 시간(제37조제1항 관련)

교육대상		교육시간
1.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매 2년마다 16시간
2. 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가.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매 2년마다 8시간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매 2년마다 16시간
3.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매 2년마다 16시간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매 2년마다 8시간)
	나.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급인과 수급인이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매 2년마다 16시간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매 2년마다 8시간)
	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담당자	매 2년마다 16시간
	라.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화학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람	매 2년마다 16시간

비고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술인력이 되거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술인력이 되거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 그 기술인력이 되거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 제3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시간 중 8시간을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으로 대체할 수 없다.
- 제3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제외한다)가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날부터 2년 전까지의 기간에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육 중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과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16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그 받아야 하는 안전교육 시간 중 8시간을 면제한다.

4. 제3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등의 재난 발생으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렵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수시기 및 교육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내용(제37조제5항 관련)

1.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취득 대상자(영 제1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교육내용
가. 「화학물질관리법」 및 일반 화학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및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사업장 위험도 분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라. 화학물질의 유해성 분류 및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 마. 화학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바. 화학사고 시 대피·대응 방법에 관한 사항 사. 개인보호구, 방제 장비 등 선정 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및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교육내용
가. 「화학물질관리법」 및 일반 화학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및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다. 유해화학물질 유해성 및 분류·표시방법에 관한 사항 라. 유해화학물질 취급형태별 준수사항 및 취급기준에 관한 사항 마.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바. 화학사고 시 대피·대응 방법 및 개인보호구 착용 실습에 관한 사항 사. 화학물질 누출 시 응급조치 요령에 관한 사항

3.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교육내용
가. 「화학물질관리법」 및 일반 화학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및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다.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분류·표시방법에 관한 사항 라. 유해화학물질 상·하차, 이동, 취급, 보관·저장 시 준수사항 및 취급기준에 관한 사항 마.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바. 화학사고 시 대피·대응 방법 및 개인보호구 착용 실습에 관한 사항 사. 화학물질 누출 시 응급조치 요령에 관한 사항

4. 유해화학물질 운반자

교육내용
가. 「화학물질관리법」 및 일반 화학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나.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표시 및 운반계획서 작성에 관한 사항

- | |
|---|
| 다. 유해화학물질 상·하차, 이동 시 준수사항
라. 화학사고 시 대피·대응 방법 및 개인보호구 착용 실습에 관한 사항
마. 화학물질 노출 시 응급조치 요령에 관한 사항 |
|---|

5.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종사자

교육내용
가.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나. 화학사고 대피·대응 방법 및 사고 시 행동요령에 관한 사항 다. 업종별 유해화학물질 취급방법에 관한 사항

행정처분의 기준(제40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제2호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허가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 1)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국민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업무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공익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위반 행위자가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하게 되는 등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5)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취급시설 개선투자 및 안전 환경 인력 채용을 확대한 경우
- 6)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사고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경우
- 7) 법 제14조에 따른 개인보호장구 착용 의무 이행을 위해 작업자에 대하여 정

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8) 유해화학물질 취급을 도급받은 수급인이 도급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 도급인이 해당 수급인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충분히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9)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항력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해당 영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사용하게 한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1호	영업 정지 15일	허가 취소		
나.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의2 제1항제1호, 법 제35조 제2항제2호	개선 명령	경고	영업 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다.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의2 제1항제2호, 법 제35조 제2항제3호				
1) 법 제13조제2호의 취급 기준을 위반한 경우		개선 명령	경고	영업 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2) 그 밖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위반한 경우		경고	경고	경고	영업정지 5일
라.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의2 제1항제3호,				

<p>1) 사업주가 개인보호장구를 지급하지 않아 작업자가 착용하지 않은 경우</p>	<p>법 제35조 제2항제4호</p>	<p>개선 명령</p>	<p>경고</p>	<p>영업 정지 15일</p>	<p>영업정지 1개월</p>
<p>2) 사업주가 개인보호장구를 지급하였으나 작업자가 착용하지 않은 경우</p>		<p>경고</p>	<p>경고</p>	<p>경고</p>	<p>영업정지 5일</p>
<p>다.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을 초과하여 진열·보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관·저장 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유해화학물질을 진열·보관한 경우</p>	<p>법 제34조의2 제1항제4호, 법 제35조 제2항제5호</p>				
<p>1)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을 초과하여 진열·보관한 경우</p>		<p>경고</p>	<p>경고</p>	<p>영업 정지 5일</p>	<p>영업정지 1개월</p>
<p>2) 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관·저장 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유해화학물질을 진열·보관한 경우</p>		<p>개선 명령</p>	<p>경고</p>	<p>영업 정지 15일</p>	<p>영업정지 1개월</p>
<p>바.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반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한 경우</p>	<p>법 제35조 제2항제6호</p>	<p>경고</p>	<p>경고</p>	<p>영업 정지 5일</p>	<p>영업정지 1개월</p>
<p>사.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p>	<p>법 제34조의2 제5호, 법 제35조</p>	<p>개선 명령</p>	<p>경고</p>	<p>영업 정지 5일</p>	<p>영업정지 1개월</p>

<p>아.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중지 명령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p>	<p>제2항제7호 법 제35조 제2항제8호</p>	<p>영업 정지 1개월</p>	<p>허가 취소</p>			
<p>자. 법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p>	<p>법 제35조 제2항제8 호의2</p>					
<p>1) 화학사고 발생 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따른 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p>		<p>경고</p>	<p>영업 정지 5일</p>	<p>영업 정지 15일</p>	<p>영업 정지 15일</p>	
<p>2) 그 밖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p>		<p>경고</p>	<p>영업 정지 5일</p>	<p>영업 정지 1개월</p>	<p>영업 정지 1개월</p>	
<p>차. 법 제23조의3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p>	<p>법 제34조의2 제1항제5 호의2, 법 제35조 제2항제8 호의3</p>	<p>개선 명령</p>	<p>경고 정지 5일</p>	<p>영업 정지 5일</p>	<p>영업 정지 1개월</p>	
<p>카.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p>	<p>법 제35조 제2항제9호</p>					
<p>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p>		<p>개선 명령</p>	<p>영업 정지 5일</p>	<p>영업 정지 1개월</p>		

<p>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p>		<p>개선 명령</p>	<p>영업 정지 15일</p>	<p>영업 정지 3개월</p>	
<p>타.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지 않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p>	<p>법 제35조 제2항제10호</p>				
<p>1)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p>		<p>개선 명령</p>	<p>영업 정지 15일</p>	<p>영업 정지 1개월</p>	
<p>2)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지 않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p>		<p>영업 정지 1개월</p>	<p>영업 정지 6개월</p>		
<p>파. 법 제25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p>	<p>법 제35조 제2항제11호</p>	<p>개선 명령</p>	<p>영업 정지 15일</p>	<p>영업 정지 3개월</p>	
<p>하.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급시설 및 장비 등을 점검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하지 않은 경우</p>	<p>법 제34조의2 제6호, 법 제35조 제2항제12호</p>	<p>개선 명령</p>	<p>경고</p>	<p>영업 정지 5일</p>	<p>영업정지 1개월</p>
<p>거.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p>	<p>법 제34조의2 제1항제7호, 법 제35조 제2항제13호</p>	<p>개선 명령</p>	<p>영업 정지 15일</p>	<p>영업 정지 1개월</p>	
<p>너.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p>	<p>법 제35조</p>	<p>허가</p>			

영업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한 경우	제2항제14호	취소				
더. 법 제28조제5항 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의2 제1항제8호, 법 제35조 제2항제15호	개선 명령	영업 정지 5일	영업 정지 1개월		
러.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16호	경고	경고	영업 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머. 법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능력과 기준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도급한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17호	경고	경고	영업 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버. 법 제31조제5항을 위반하여 무리한 취급시설의 운영 등을 요구한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18호	경고	영업 정지 5일	영업 정지 1개월		
서.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의2 제1항제9호, 법 제35조 제2항제19호	개선 명령	영업 정지 5일	영업 정지 15일		
어. 법 제40조를 위반하여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의2 제1항제10호, 법 제35조 제2항제20호	개선 명령	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개월		
1) 사고대비물질의 유출·누출 또는 도난·전용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그 밖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경고	경고	경고	영업정지 5일
저. 법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즉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23호	경고	영업 정지 15일	영업 허가 취소	
처.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34 조의2제1 항제11호, 법 제35조 제2항제24호				
1)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개선 명령	영업 정지 5일	영업 정지 1개월	
2)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경고	영업 정지 5일	영업 정지 1개월	
커.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 조의2제1 항제12호, 법 제35조 제2항제25호	개선 명령	경고	영업 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터.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화학사고가 발생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재산·환경에 영향이 발생한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26호				
1) 업무상 과실로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p>가)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p>	경고	영업 정지 5일	영업 정지 15일
<p>나)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p>	경고	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개월
<p>다) 법 제45조에 따라 화학사고 조사단이 실시한 영향조사 결과 사업장 밖 피해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p>	피해 금액 1억원 당 영업 정지 1일 (최대 30일)	피해 금액 1억원 당 영업 정지 1일 (최대 60일)	
<p>2)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p>			
<p>가)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p>	영업 정지 5일	영업 정지 15일	
<p>나)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p>	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개월	
<p>다) 법 제45조에 따라 화학사고 조사단이 실시한 영향조사 결과 사업장 밖 피해금액</p>	피해 금액 5 천만원	피해 금액 5 천만원	

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당 영업 정지 1일 (최대 90일)	당 영업 정지 1일 (최대 180일)		
--------------	--	------------------------------------	-------------------------------------	--	--

공동활용 승인 신청 시 첨부서류 작성방법(제42조제2항 관련)

1. "공동활용계획서"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구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다.
 - 가.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공동 활용하는 경우에는 동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할 업소별 업무내용(종업원에 대한 교육 및 지도·감독, 시설·장비 확인 등), 근무소요시간과 배분근무계획 등
 - 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중 제조시설을 공동 활용하는 경우에는 업소별 취급 유해화학물질명 및 사용량과 1회 사용 시 소요시간(원료투입부터 포장까지)과 업소별 사용시간의 원칙적 배정내역 등
 - 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중 보관·저장시설을 공동 활용하는 경우에는 업소별 사용면적 또는 사용용량, 위치 등을 구분하여 도면에 표시하고 잠금장치의 열쇠 보관관리 등 안전설비관리계획
 - 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중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을 공동 활용하는 경우에는 운반하려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별·성상별 일일운반소요량, 일일운반능력(대당운반능력×횟수×대수)과 운반차량의 업소별 활용시간배정계획, 세차 등 차량관리계획
2. "개별업소의 명세 및 위치도"는 공동활용 업소의 위치와 이동로 및 이동거리 등을 표시한 도면에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개별업소별 유해화학물질 관련 시설 및 장비의 내역서"는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 신청 시 제출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장비의 명세서로 같음한다.
4. "개별업소 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권리·의무 등의 협약서"에는 공동 활용 내역, 유해화학물질 사고 시 공동대처방안, 대표업소의 선정,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업무한계 및 업무지원 내역(유해화학물질관리자 공동활용의 경우)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5. "개별업소별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업무대행자 지정내역서"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부재 시 유독물 관리업무를 보좌할 수 있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고 그 업무내역을 기재한다.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제44조 관련)

1. 니트로벤젠, 황산, 질산, 산화질소, 니트로메탄, 질산암모늄, 헥사민, 과산화수소, 염소산칼륨, 질산칼륨, 과염소산칼륨, 과망간산칼륨, 염소산나트륨, 질산나트륨, 사린, 염화시아니드 및 도난·전용 위험 등이 있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해당 사고대비물질을 인계하는 자는 인수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제56조에 따라 해당 사항을 화학물질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나. 취급시설 및 판매시설의 출입자와 방문차량을 확인하여 제56조에 따라 해당 사항을 화학물질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다. 해당 사고대비물질에 대한 취급시설 운영자·관리자 또는 관계자가 아닌 사람의 접근을 엄격히 차단하고 저장·보관시설, 진열·보관장소 및 운반차량에 경보장치 또는 잠금장치 등 물리적인 보안장치를 설치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라. 해당 사고대비물질을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게 판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보호자의 동의서를 제출하는 때는 제외하며, 5년간 동의서를 보존해야 한다.

마. 해당 사고대비물질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때에는 그 내용을 즉시 경찰서, 국가정보원 또는 화학물질안전원에 신고해야 한다.

2. 그 밖에 사고대비물질의 안전한 관리 및 화학사고 예방·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관리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삭제 <2021. 4. 1.>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삭제 <2021. 4. 1.>

수수료(제59조제1항 관련)

종별	수수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
1. 화학물질확인증명 신청	13,000원(매품목당)	11,700원(매품목당)
2.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 허가 신청	13,000원(매품목당)	11,700원(매품목당)
3.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9,000원(매품목당)	7,200원(매품목당)
4. 허가물질 허가 및 재허가 신청	13,000원(매품목당)	11,700원(매품목당)
5. 제한물질 수입 허가 신청	13,000원(매품목당)	11,700원(매품목당)
6. 제한물질 수입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9,000원(매품목당)	7,200원(매품목당)
7. 유독물질 수입신고	13,000원(매품목당)	11,700원(매품목당)
8. 유독물질 수입 변경신고	9,000원(매품목당)	7,200원(매품목당)
9. 제한물질·금지물질 수출승인 신청	13,000원(매품목당)	11,700원(매품목당)
10. 제한물질·금지물질 수출승인 변경 신청	9,000원(매품목당)	7,200원(매품목당)
11. 삭제 <2022. 1. 10.>		
12. 삭제 <2022. 1. 10.>		
13.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 신청	30,000원	27,000원
14.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20,000원	18,000원
15. 유해화학물질 취급도급 신고	13,000원	11,700원
16.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변경신고	9,000원	7,200원
17. 유해화학물질 영업 재개 신고	13,000원	11,700원
18. 취급시설의 검사(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 및 안전진단	시설규모별 인건비·경비 및 출장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비고 : 지방환경청장·유역환경청장·화학물질안전원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위임 및 위탁 업무의 보고사항 및 보고일 등(제60조제1항 관련)

보고사항	보고횟수	보고일	보고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운영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화학물질 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실적 및 운영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화학물질 안전원장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화학물질 안전원장
자료보호 신청의 접수 및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에 관한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화학물질 안전원장
과태료의 부과·징수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화학물질안전원장
화학물질 통계조사 현황 및 결과	연 1회	조사 완료 후	화학물질안전원장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현황 및 결과	연 1회	조사 완료 후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의 진열·보관계획서, 운반계획서 운영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관서의 장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해제요청서 접수, 해제 여부 확인서 발급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관서의 장
금지물질의 취급금지 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관서의 장
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 허가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관서의 장
제한물질의 수입허가 및 변경허가, 변경신고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관서의 장
유독물질의 수입신고 및 변경신고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관서의 장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관 서의 장
취급시설의 검사 및 안전진단 관리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관 서의 장
취급시설 개선명령 및 가동중지 명령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관 서의 장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 및 정보제공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관 서의 장
시약 판매업 신고 및 변경신고 현황	연 1회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지방환경관 서의 장
도급신고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 관리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관 서의 장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신고 등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관리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관 서의 장
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휴업·폐업 신고 및 조치명령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관 서의 장
영업허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관 서의 장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관 서의 장
권리·의무승계 신고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관 서의 장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활용 승인 및 신고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관 서의 장
화학사고 현장 대응 현황	수시	사고 발생 시	지방환경관 서의 장
화학사고 영향조사 현황	수시	사고 발생 시	지방환경관 서의 장
화학사고 조치명령 현황	수시	사고 발생 시	지방환경관 서의 장
자료보호 신청의 접수 및 자료보호 대상이	연 2회	매반기 종료	지방환경관

아닌 자료의 통지 현황		후 15일 이내	서의 장
과태료의 부과·징수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관 서의 장
화학물질 확인 업무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협회의 장
자료보호 신청의 접수 및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협회의 장

[] 제조 [] 수입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제조 (수입)자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제조 (수입) 제품명세	① 제품명(상품명)	② 수입국	③ 연간제조(수입) 예정량(kg)	④ HSK No.	⑤ 주요용도
	⑥ 확인방법	[] 성분명세서 [] 화학물질확인 증명서(증명번호: 제 호) [] 확인 관련 서류(제공자: []제조사 []수출자 []확인을 위임받은 자)			
수입제품 (상품) 정보	⑦ 모델·규격				
확인 관련 서류 제공자	상호(명칭)				
	주소		(전화번호:)		
	담당자	성 명 부서명	전화 및 팩스 전자우편		
⑧ 확인 내용	구분	함유여부	있음	없음	
	기존화학물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대상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등록면제대상	[]	
	신규화학물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대상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등록면제대상	[]	
	유독물질		화학물질명[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
			함량 또는 함량범위(%)		
	허가물질		화학물질명[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
			함량 또는 함량범위(%)		
	제한물질		화학물질명[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
함량 또는 함량범위(%)					
금지물질		화학물질명[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	
		함량 또는 함량범위(%)			
사고대비물질		화학물질명[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	
		함량 또는 함량범위(%)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 제조 []
수입하는 위 제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조(수입)자 :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화학물질 확인에 이용한 자료 1부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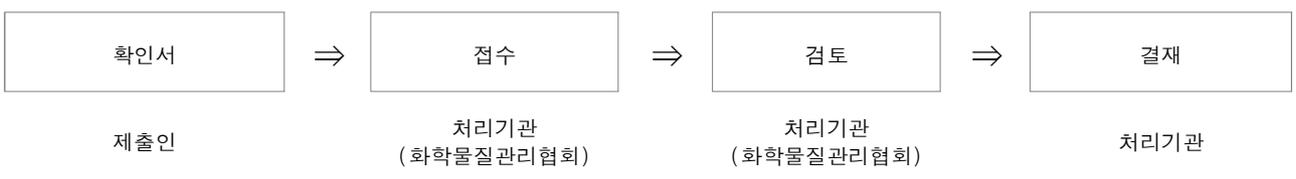
작성방법

1. “제조자”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자를 말하며, “수입자”란 같은 법에 따라 수입하려는 자(「관세법」 제19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말합니다.
2. ①란은 제품명을 제조 또는 수입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②란은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그 수입국을 적습니다.
4. ③란은 연간 제조량 또는 수입량을 예상하여 적습니다.
5. ④란은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통계통합분류표의 품목번호(HSK No.: Harmonized System Korea Number)를 적습니다.
6. ⑤란은 그 상품의 주요 용도를 적습니다.
7. ⑥란은 확인제품에 들어 있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⑧란의 각 확인 내용을 확인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단, 화학물질확인 증명서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에 한하여 확인명세서의 제출이 면제됩니다.
8. 확인을 위임받은 자는 제조(수입)자를 대신하여 실제 화학물질에 대한 확인을 한 자를 말합니다.
9. ⑦란은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관세법 시행규칙」 제1호의3서식에 따른 수입신고서에 기재하는 해당 수입제품(상품)의 모델 및 규격사항을 적습니다.
10. ⑧란은 기존화학물질, 신규화학물질,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사고대비물질 함유여부를 해당란에 표시하여야 하고,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사고대비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물질의 화학물질명,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및 제품 중 함량 또는 함량범위(%)를 적어야 합니다.

처리절차

이 확인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출인	처리기관		
	「화학물질관리법」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화학물질관리에 관한 협회		



첨부서류	화학물질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제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화학물질의 함량,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등이 적힌 성분명세서 1부	수수료 13,00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 11,700원)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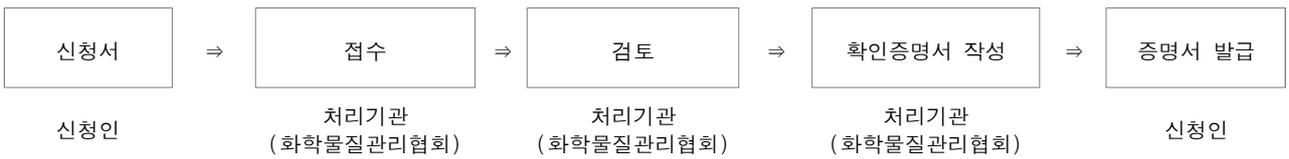
작성방법

1. ①란은 제품명을 제조 또는 수입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②란은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그 수입국을 적습니다.
3. ③란은 연간 제조량 또는 수입량을 예상하여 적습니다.
4. ④란은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통계통합분류표의 품목번호(HSK No. : Harmonized System Korea Number)를 적습니다.
5. ⑤란은 그 제품의 주요 용도를 적습니다.
6. ⑥란은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관세법 시행규칙」 제1호의3서식에 따른 수입신고서에 기재하는 해당 수입제품(상품)의 모델 및 규격사항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화학물질관리법」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화학물질관리에 관한 협회



증명번호		<input type="checkbox"/> 제조 <input type="checkbox"/> 수입 화학물질 확인증명서		
체 호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제품명(상품명)				
수입국				
연간제조(수입) 예정량		kg		
HSK No.				
주요용도				
수입 제품 (상품) 정보	모델·규격			
확인신청내용(신청인)		확인내용(협회)		
확인조건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귀하가 제시하는 관련 서류에 근거한 <input type="checkbox"/> 제조 <input type="checkbox"/> 수입 화학물질확인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 협회장 직인				

배출저감계획서 검토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출저감계획서의 검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배출저감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화학물질안전원장



통보번호	배출저감계획서 검토결과서	
제 호		
신청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검토 대상 배출저감계획서		
검토 결과		
<p>「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출저감계획서의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화학물질안전원 장 직인</p>		
붙임서류: 적합 여부 상세 내용 1부		

통보번호	배출저감계획서 수정·보완 요청서	
제 호		
신청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검토 대상 배출저감계획서		
수정·보완 필요 사항		
수정·보완서류 제출 마감일		
<p>「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배출저감계획서의 수정·보완을 요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화학물질안전원 장 직인</p>		
붙임서류: 수정·보완사항 상세 내용 1부		

화학물질안전원

수신자

(경유)

제 목 화학물질 취급정보의 공개계획 통보

1.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관보나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등)에 공개하려 합니다.

공개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대상자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공개내용				
심의신청서 제출기한				

2. 공개대상 정보의 비공개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 내에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화학물질 정보공개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끝.

화학물질안전원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화학물질 정보공개 심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심의결과 등의 수령 방법	[] 우편 [] 팩스 전송 () [] 전자우편 ()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 정보공개에 관한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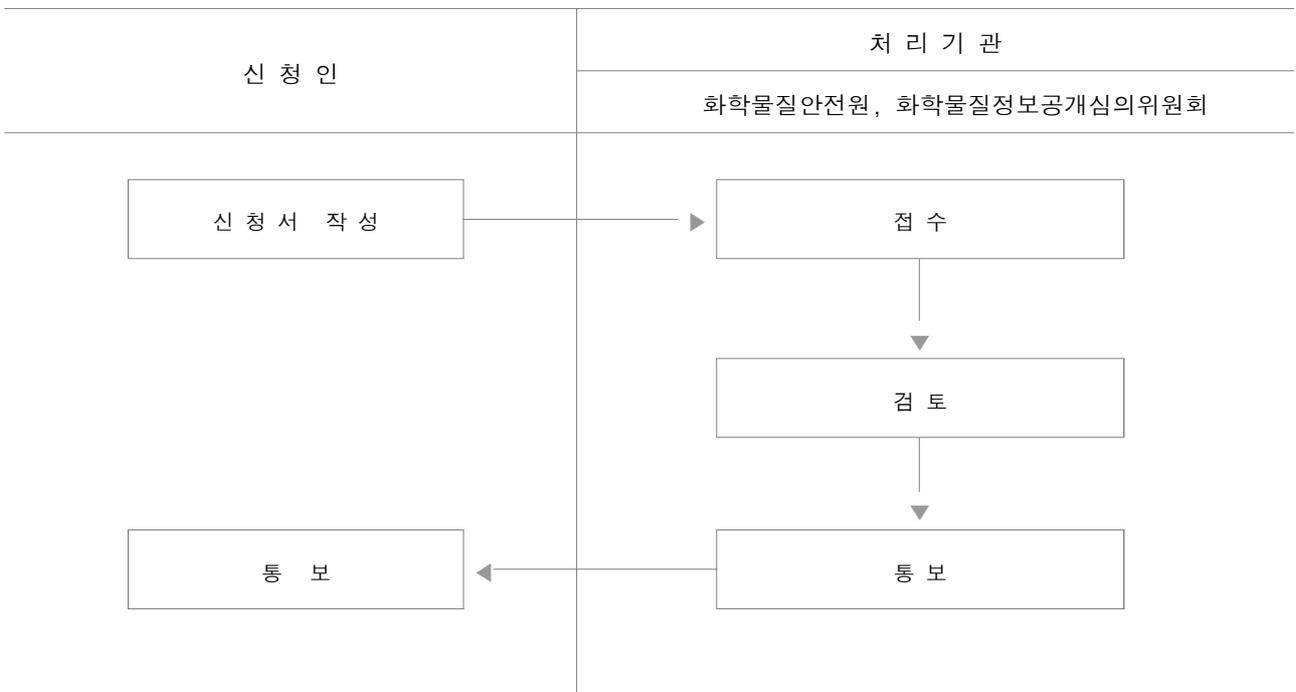
첨부서류	1. 비공개를 원하는 정보의 심의신청 항목 2. 심의신청 항목별 비공개 이유서 및 항목별 비공개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화학물질 통계조사표 사본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화학물질 통계조사표 사본에 비공개를 요청하는 항목을 표시(밑줄, 동그라미 표시 또는 색칠 등)하여 제출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화학물질안전원

수신

(경유)

제목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1.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정보 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공개 또는 비공개 신청항목				
심의결과				

2.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정보공개 소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화학물질안전원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정보공개 소명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소명 내용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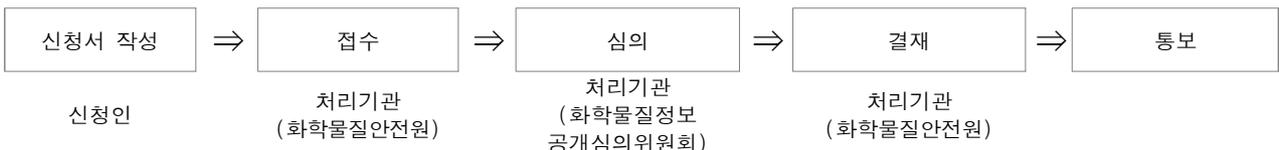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작성방법

소명 내용란은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정보의 공개계획에 대한 소명 내용을 작성합니다.

처리절차



통지번호		소명서 처리결과 통보서		
제 호				
정보 공개 대상자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공개 여부	<input type="checkbox"/> 공개 <input type="checkbox"/> 부분공개 <input type="checkbox"/> 비공개			
공개 내용				
공개 방법				
공개 시점	년 월 일부터			
<p>「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6항에 따라 정보공개 소명서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화학물질안전원장 직인 </p>				

유해화학물질 진열·보관계획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제출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①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유해화학물질명	진열·보관수량(kg)	방재장비 목록

「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진열·보관계획서를 작성·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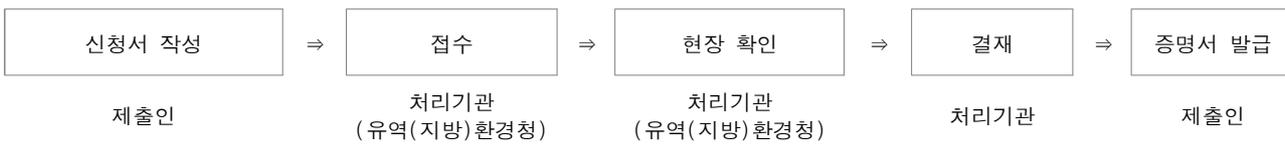
작성방법

① 란은 유해화학물질을 진열·보관하는 사업장 주소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출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증명번호		진열·보관계획 등 확인증명서	
제 호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적정성 여부	[] 적정 [] 조건부 적정 [] 부적정		
진열·보관 조건			
취급시 주의사항			
방제요령	누출 시 :		
	화재 시 :		
	폭발 시 :		
비상시 연락기관	(전화번호:)		
<p>「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진열·보관계획 등 확인 증명서를 발급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유역(지방)환경청장 직인 </p>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제출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제출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운반업체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운반차량번호)	
	운반자 성명 및 연락처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번호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유해화학물질명	함량(%)	수량(kg)	휴대용 방재장비

「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를 작성·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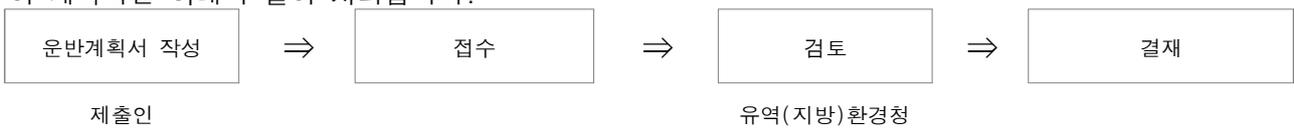
첨부서류	운반자, 경로, 노선, 운반시간 및 휴식시간(별표 1 제28호에 따라 휴식을 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을 포함한 통행도로 상세내역 1부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운반업체는 실제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업체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계획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요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요청 사항	화학물질명	
	중지 해제 요청 사유	

「화학물질관리법」 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 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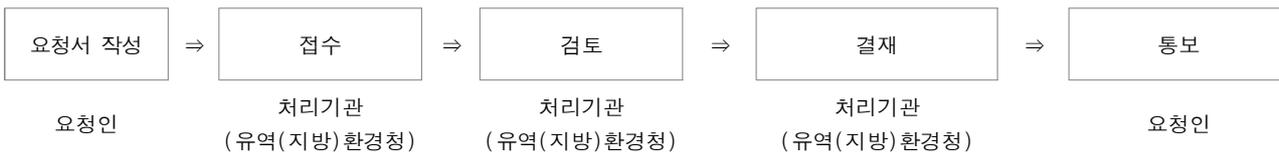
요청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확인번호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해제 여부 확인서			
제 호				
요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중지 해제	<input type="checkbox"/> 수용 <input type="checkbox"/> 부분 수용 <input type="checkbox"/> 불수용			
중지 해제 내용 ※ 수용 또는 부분수용시 작성				
중지 해제 시점 ※ 수용 또는 부분수용시 작성	년 월 일부터			
<p>「화학물질관리법」 제17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 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해제 여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유역(지방)환경청장		<div style="border: 2px solid orange; width: 60px; height: 60px;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margin: 0 auto;"> 직인 </div>		

[] 제조
금지물질 [] 수입 허가신청서
[] 판매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5일
------	-----	-----	------	-----

신청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신청사항	① 제품명(상품명)		
	② 제조국(수입국)		
	③ 주요 용도		
	④ 연간 예정량	kg	
	⑤ HSK No.		
	수입제품(상품) 정보	⑥ 모델·규격	
	금지물질 함유 내용	⑦ 명칭	
		⑧ 금지물질 번호 또는 화학물질 식별 번호(CAS No.)	
		⑨ 함유량(%)	
자료보호 신청 여부	[] 해당 [] 해당없음		

의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금지물질

- [] 제조
- [] 수입 허가를 신청합니다.
- [] 판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사용·판매 계획서 1부	수수료 매품목당 13,0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11,700원)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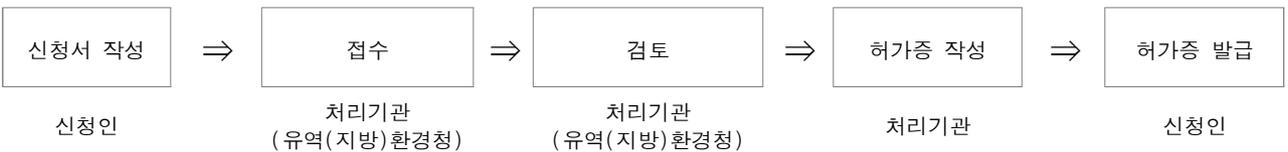
작성방법

1. ①란은 제품명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②란은 제조국 또는 수입국을 적습니다.
3. ③란은 그 상품의 주요 용도를 적습니다.
4. ④란은 연간 제조·수입 또는 판매 총량을 예상하여 적습니다.
5. ⑤란은 상품에 대한 관세·통계통합분류표의 품목번호(HSK No.: Harmonized System Korea Number)를 적습니다.
6. ⑥란은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관세법 시행규칙」 제1호의3서식에 따른 수입신고서에 기재하는 해당 수입제품(상품)의 모델 및 규격사항을 적습니다.
7. ⑦란부터 ⑨란까지는 상품에 포함된 금지물질을 종류별로 적습니다.
8. 앞쪽 빈칸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허가번호		<div style="text-align: center;"> <input type="checkbox"/> 제조 <input type="checkbox"/> 수입 <input type="checkbox"/> 판매 </div> 허가증		
제 호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제품명(상품명)				
제조국(수입국)				
금지물질의 명칭				
연간 허가량		kg		
용도				
수입 제품 (상품) 정보	모델·규격			
허가조건				
허가기간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 물질의 <input type="checkbox"/> 제조를 <input type="checkbox"/> 수입을 허가합니다. <input type="checkbox"/> 판매를				
년 월 일				
유역(지방)환경청장		<div style="border: 2px solid orange;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직인 </div>		

허가번호 [] 제조 [] 변경허가신청서
 제 호 금지물질 [] 수입 [] 변경신고서
 [] 판매 []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	-----	-----	----------

신청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신청정보	제조(수입/판매) 제품명(상품명)	
	수입제품 (상품) 정보	모델·규격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금지물질

- 의
- [] 제조 []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 수입 [] 변경신고를 합니다.
 - [] 판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허가증 원본 1부	수수료 9,00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 7,200원)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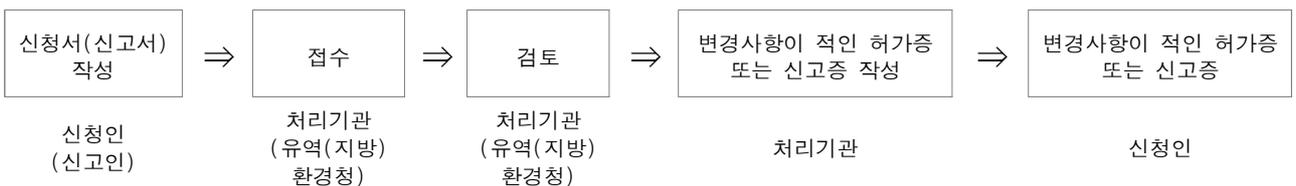
작성방법

1. 허가번호란은 금지물질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허가시 부여된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2. 제조(수입/판매) 제품명(상품명)란에는 제품명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모델·규격란은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관세법 시행규칙」 제1호의3서식에 따른 수입신고서에 기재하는 해당 수입제품(상품)의 모델 및 규격사항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 또는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 제조
[] 수입
[] 사용

허가물질 허가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0일
------	-----	-----	----------

신청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신청사항	① 제품명(상품명)			
	② 제조국(수입국)			
	③ 주요용도			
	④ 연간제조(수입/사용) 예정량	kg		
	⑤ HSK No.			
	수입 제품 (상품명) 정보	⑥ 모델·규격		
	⑦ 허가 기간			
	허가물질 함유 내용	⑧ 명칭		
		⑨ 허가물질 번호 또는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⑩ 함유량(%)		
자료보호 신청 여부	[] 해당	[] 해당없음		

「화학물질관리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허가물질

- 의
- [] 제조
 - [] 수입 허가를 신청합니다.
 - [] 사용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화학물질의 용도 상세 내역 1부 2. 화학물질의 위해성 자료 1부 3. 대안 분석 및 실행가능성 자료 1부 4. 대체 계획 자료 1부	수수료 매 품목당 13,0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11,700원)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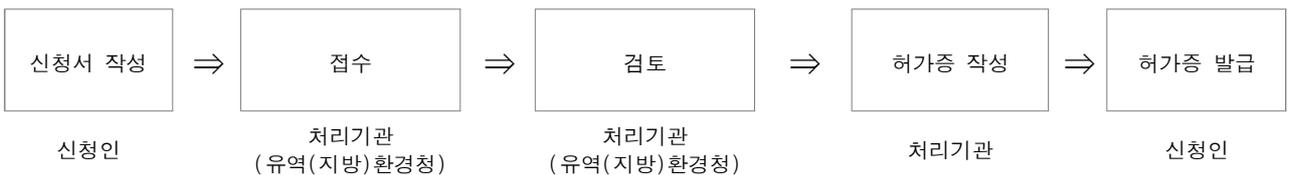
작성방법

1. ①란은 제품명을 제조·수입 또는 사용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②란은 제조국 또는 수입국을 적습니다.
3. ③란은 그 상품의 주요 용도를 적습니다.
4. ④란은 연간 제조, 수입 또는 사용 총량을 예상하여 적습니다.
5. ⑤란은 상품에 대한 관세·통계통합분류표의 품목번호(HSK No.: Harmonized System Korea Number)를 적습니다.
6. ⑥란은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관세법 시행규칙」 제1호의3서식에 따른 수입신고서에 기재하는 해당 수입제품(상품)의 모델 및 규격사항을 적습니다.
7. ⑦란은 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을 희망하는 최소한의 기간을 적습니다.
8. ⑧란부터 ⑩란까지는 상품에 포함된 허가물질을 종류별로 적습니다.
9. 앞쪽 빈칸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허가번호		허가물질 [] 제조 [] 수입 허가증 [] 사용	
제 호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제품명(상품명)			
제조국(수입국)			
허가물질의 명칭			
연간 허가량		kg	
주요용도			
수입 제품 (상품) 정보	모델·규격		
한정기간(허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준수사항			
「화학물질관리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상기 물질의 <input type="checkbox"/> 제조를 <input type="checkbox"/> 수입을 허가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사용을 <div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div>			
유역(지방)환경청장		<div style="border: 2px solid orange;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직인 </div>	

[] 제조
[] 수입
[] 사용

허가물질 재허가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신청사항	① 허가번호	
	② 재허가(한정)기간	
	자료보호 신청 여부	[] 해당 [] 해당없음

「화학물질관리법」 제1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허가물질

[] 제조
[] 수입 재허가를 신청합니다.
[] 사용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허가증 원본 1부화학물질의 용도 상세 내역 변경사항 1부(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화학물질의 위해성 변경사항 1부(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대안 분석 및 실행가능성 변경사항 1부(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대체 계획 변경사항 1부(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매품목당 13,0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11,700원)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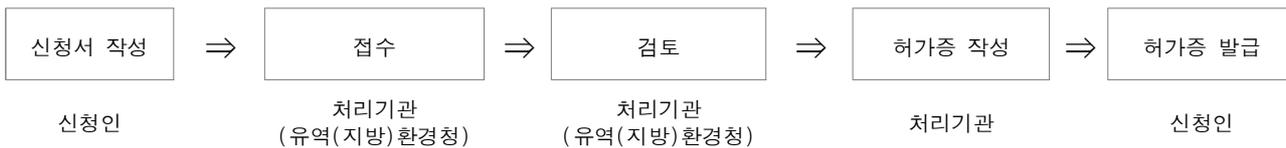
작성방법

1. ①란은 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 허가증에 적힌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2. ②란은 허가물질을 제조·수입·사용을 희망하는 최소한의 기간으로 이전 허가기간보다 짧게 작성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제한물질 수입 허가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신청사항	① 제품명(상품명)			
	② 제조국(수입국)			
	③ 주요 용도			
	④ 연간 수입 예정량		kg	
	⑤ HSK No.			
	수입 제품 (상품) 정보	⑥ 모델·규격		
	제한물질 함유 내용	⑦ 명칭		
		⑧ 제한물질 번호 또는 화학물질 식별 번호 (CAS No.)		
		⑨ 함유량(%)		
자료보호 신청 여부	[] 해당 [] 해당없음			

「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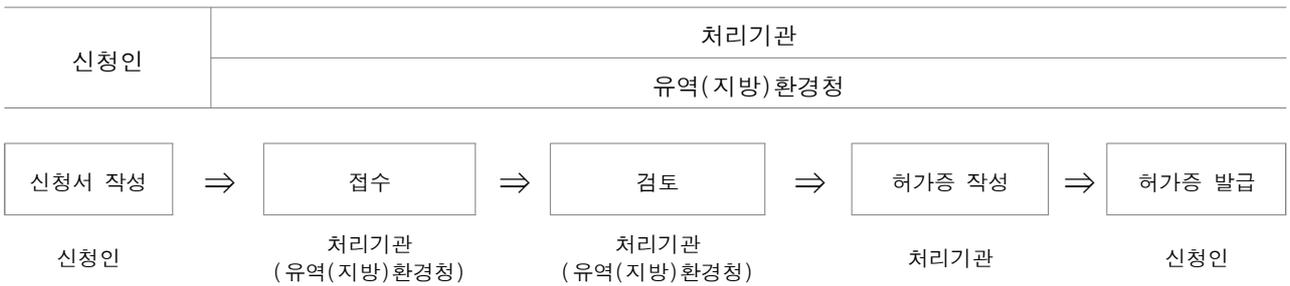
첨부서류	1. 제한물질 용도의 상세내역서 1부 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증 사본 1부(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매품목당 13,0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11,700원)
------	---	---

작성방법

1. ①란은 제품명을 적습니다.
2. ②란은 제조국 또는 수입국을 적습니다.
3. ③란은 그 상품의 주요 용도를 적습니다.
4. ④란은 연간 수입량을 예상하여 적습니다.
5. ⑤란은 상품에 대한 관세·통계통합분류표의 품목번호(HSK No.: Harmonized System Korea Number)를 적습니다.
6. ⑥란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1호의3서식에 따른 수입신고서에 기재하는 해당 수입제품(상품)의 모델 및 규격사항을 적습니다.
7. ⑦란부터 ⑨란까지는 상품에 포함된 제한물질을 종류별로 적습니다.
8. 앞쪽 빈칸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허가번호		제한물질 수입 허가증	
제 호			
신 청 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제품명(상품명)			
제한물질의 명칭			
허가량		kg	
주요용도			
수입 제품 (상품) 정보	모델·규격		
준수사항			
<p>「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 물질의 수입을 허가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유역(지방)환경청장 직인</p>			

제한물질
제 호

제한물질 수입

[] 변경허가신청서
[]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수입제품(상품명) 정보	수입제품명(상품명)		
	모델·규격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 「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라 제한물질 수입허가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라 제한물질 수입허가의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른 허가증 원본 1부	수수료 매품목당 9,0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 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7,200원)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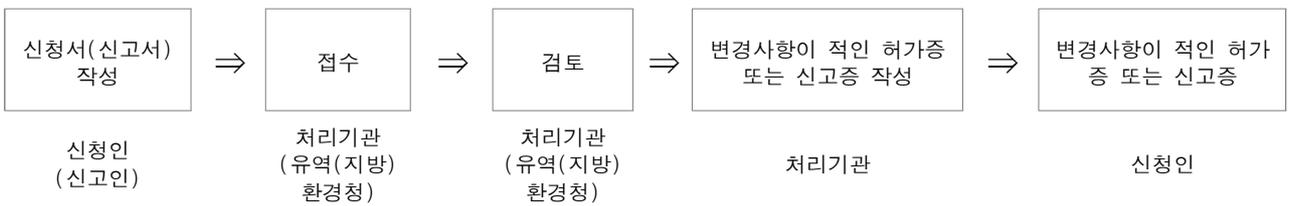
작성방법

1. 수입제품명(상품명)란은 제품명을 적습니다.
2. 모델·규격란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1호의3서식에 따른 수입신고서에 기재하는 해당 수입제품(상품)의 모델 및 규격사항을 적습니다.
3. 앞쪽 빈칸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input type="checkbox"/> 허가번호 <input type="checkbox"/> 증명번호	제한물질 수입 <input type="checkbox"/> 변경허가증 <input type="checkbox"/> 변경신고증		
제 호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제품명(상품명)			
제한물질의 명칭			
변경 허가(신고) 사항			
용도			
수입 제품 (상품) 정보	모델·규격		
준수사항			
<p>「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위 물질의</p> <input type="checkbox"/> 변경허가증을 발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변경신고증을			
년 월 일			
유역(지방)환경청장		<div style="border: 2px solid orange; width: 60px; height: 60px;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margin: 0 auto;"> 직인 </div>	

유독물질 수입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일
------	-----	-----	------	----

신고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신고사항	① 제품명(상품명)		
	② 수입국		
	③ 용도		
	④ 연간 수입 예정량	kg	
	⑤ HSK No.		
	수입 제품 (상품명) 정보	⑥ 모델·규격	
	유독물질 함유 내용	⑦ 명칭	
		⑧ 유독물질 번호 또는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⑨ 함유량(%)	
자료보호 신청 여부	[] 해당 [] 해당없음		

「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유독물질의 수입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유독물질 성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품목당 13,0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11,700원)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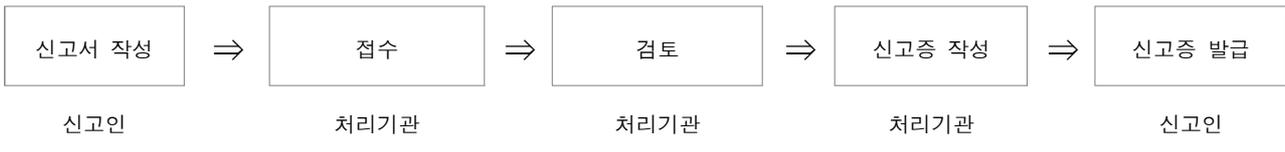
작성방법

1. ①란은 제품명을 적습니다.
2. ②란은 수입국을 적습니다.
3. ③란은 그 제품의 주요 용도를 적습니다.
4. ④란은 연간 수입 총량을 예상하여 적습니다.
5. ⑤란은 제품에 대한 관세·통계통합분류표의 품목번호(HSK No.: Harmonized System Korea Number)를 적습니다.
6. ⑥란은 실제 「관세법 시행규칙」 제1호의3서식에 따른 수입신고서에 기재하는 해당 수입제품(상품)의 모델 및 규격사항을 적습니다.
7. ⑦란부터 ⑨란까지는 제품에 포함된 유독물질을 종류별로 적습니다.
8. 앞쪽 빈칸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신고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확인번호		유독물질 수입신고증		
제 호				
신 청 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제품명(상품명)				
수입국				
유독물질의 명칭				
신고량		kg		
주요 용도				
수입 제품 (상품) 정보	모델·규격			
준수사항				
<p>「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 물질의 수입신고를 수리하였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유역(지방)환경청장 직인 </p>				

신고번호

유독물질 수입 변경신고서

제 호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일
신고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수입제품(상품명) (상품명) 정보	수입제품명(상품명)		
	모델·규격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유독물질 수입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른 수입 신고증 원본 1부	품목당 9,0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7,2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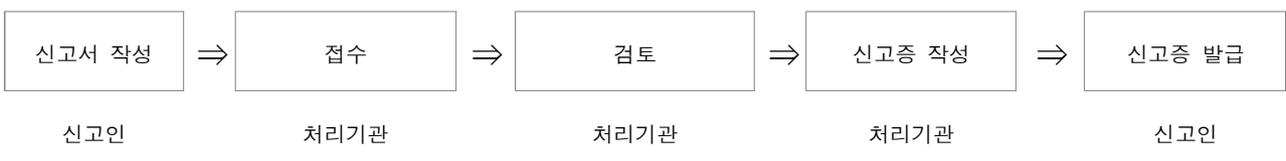
작성방법

1. 수입제품명(상품명)란은 제품명을 적습니다.
2. 모델·규격란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1호의3서식에 따른 수입신고서에 기재하는 해당 수입제품(상품)의 모델 및 규격사항을 적습니다.
3. 앞쪽 빈칸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증명번호 제 호	<h2 style="margin: 0;">유독물질 수입 변경신고증</h2>		
신고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제품명(상품명)			
유독물질의 명칭			
변경 신고 사항			
주요 용도			
수입 제품 (상품) 정보	모델·규격		
준수사항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5항에 따라 위 물질의 수입 변경 신고를 수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 년 월 일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30px;"> 유역(지방)환경청장 직인 </div>			

제한물질 · 금지물질 수출승인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신청사항	① 수출제품명 (상품명)		
	② 주요용도		
	③ 해당 연도 수출 예정량		kg
	④ HSK No.		
	⑤ 수입국		
	⑥ 수입자 상호		
	제한물질 · 금지 물질 함유내용	⑦ 명칭	
		⑧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⑨ 함유량(%)	
		⑩ 로테르담협약 부속서 III 등재물질 여부	

「화학물질관리법」 제21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 · 금지물질 수출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화학물질관리법」 제2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수출통보서 2부 2.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2부 3. 수출자 책임보증서 ※ 로테르담협약 부속서 III에 규정된 화학물질인 경우에는 수출자 책임보증서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매품목당 13,0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11,700원)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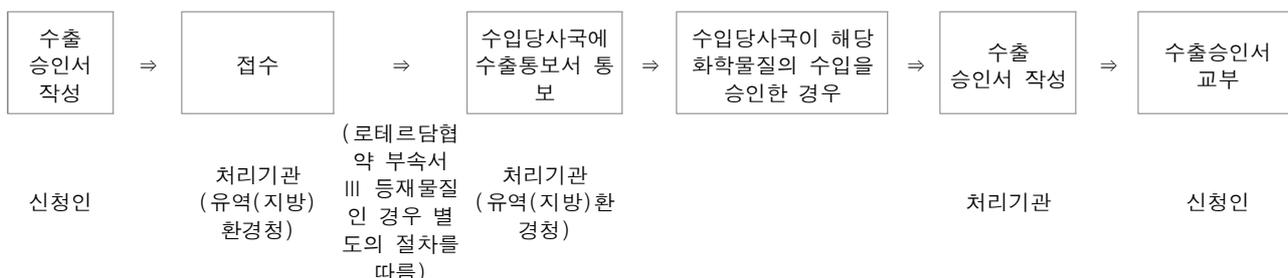
작성방법

1. ①란은 수출제품의 이름을 적습니다.
2. ②란은 수출용도 등 그 상품의 주요 용도를 적습니다.
3. ③란은 해당 연도의 수출총량을 예상하여 적습니다.
4. ④란은 수출상품에 대한 관세·통계통합분류표의 품목번호(HSK No.: Harmonized System Korea Number)를 적습니다.
5. ⑤란 및 ⑥란은 수입국 및 수입자의 상호를 적습니다.
6. ⑦란부터 ⑩란까지는 수출상품에 포함된 제한물질·금지물질을 종류별로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승인번호		제한물질 · 금지물질 수출승인서		
제 호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수출제품명 (상품명)		주요 용도		
해당 연도 수출예정량	kg	HSK No.		
수입국		수입자 상호		
제한물질 · 금지물질 함유 내용	명칭	화학물질 식별번호 (CAS No.)	함유량(%)	
유효기간	년 12월 31일까지			
유효조건	동일한 수출제품에 대하여도 수입국이 다른 경우에는 따로 수출승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p>「화학물질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제한물질 · 금지물질의 수출을 승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유역(지방)환경청장 직인 </p>				

승인번호 [] 제한물질
제 호 [] 금지물질

수출 변경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수출제품명(상품명)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화학물질관리법」 제2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에 따 [] 제한물질의
라 []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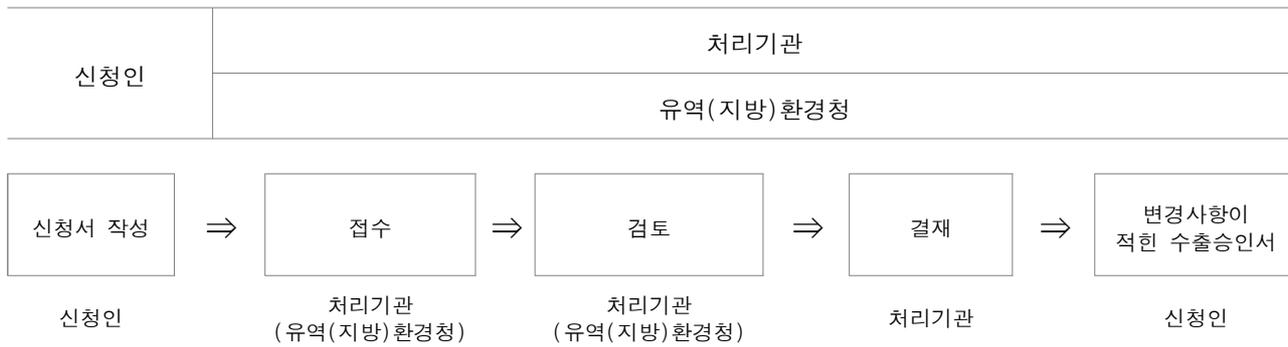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른 수출승인서 원본	매 품목당 9,0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7,200원)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승인번호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 <input type="checkbox"/> 제한물질 <input type="checkbox"/> 금지물질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수출승인 변경승인서 </div> </div>		
제 호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수출제 품명 (상품명)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p>「화학물질관리법」 제2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에 따라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변경을 승인합니다.</p>			
			년 월 일
유역(지방)환경청장		<div style="border: 2px solid orange; width: 60px; height: 60px;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margin: 0 auto;"> 직인 </div>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0일
------	-----	-----	----------

제출방법 []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 서면

신	상호(명칭)	담당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번호)
청	대표자 성명	정보	전자우편주소
인	취급시설 소재지		
관할지방환경관서 : () 유역(지방)환경관서 / ()합동방재센터			

신	제출구분	[] 신규제출	[] 부적합 후 재제출
		[] 재제출	[] 이행점검 부적정 재제출
청	사업장 구분	[] 5년 재제출	[] 이행정검 부적정 재제출
내 용	영업허가 대상	[] 1군 사업장	[] 2군 사업장
	공동비상대응계획 작성·제출 여부	[] 영업자(영업허가 대상)	[] 비영업자(영업허가 면제대상)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검토생략 대상	[] 해당	[] 미해당
		[] 안전성향상계획	[] 공정안전보고서 [] 미해당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4항 또는 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를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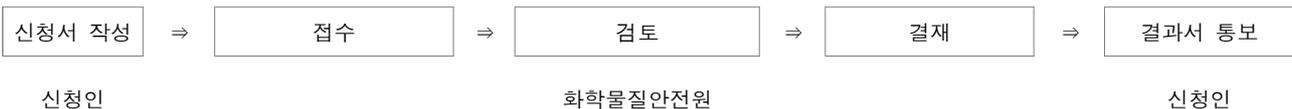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첨부 서류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2.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공동비상대응계획 작성·제출에 관한 자료(공동으로 비상대응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안전성향상계획 또는 공정안전보고서에 대한 심사결과통지서(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별지 제31호의3서식의 안전성향상계획·공정안전보고 변경사항 부존재 확인서(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안전성향상계획 · 공정안전보고서 변경사항 부존재 확인서

제출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연락처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심사 결과 확인	종류 [] 안전성향상계획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기관
	대상 공장(공정)	심사결과 통지일
	대상 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에 따라 안전성향상계획 ·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결과 통지 후 변경사항이 없음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 검토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제출일	접수일	처리기간(30일)
------	-----	-----	-----------

제출방법 []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 서면

신 청 인	상호(명칭)	담당자 정보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대표자 성명		전자우편 주소
청 인	취급시설 소재지		
	(최종) 적합통보 번호		(최종) 적합통보 일자
	영업허가 대상 여부	[] 영업자	[] 비영업자

변경 [] 사업장 구분 변경: 변경 전 () 군 사업장, 변경 후 () 군 사업장

사항 [] 그 밖의 사유()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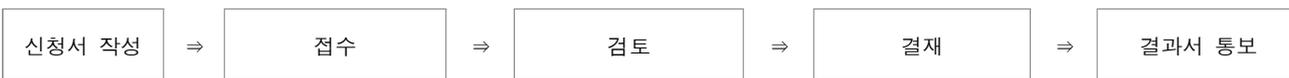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첨부 서류	1.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2.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공동 비상대응계획 작성·제출에 관한 자료(공동으로 비상대응 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화학물질안전원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적합 상세내용>

장외영향평가서 민원번호	결과번호	적합날짜	위험도

위해관리계획서 민원번호	결과번호	적합날짜

※ 해당 없을 경우 “해당없음” 으로 기재합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제출 이력>

적합 결과번호	사업장 구분 (1군/2군)	위험도	상세내용	적합통보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사항 상세내용>

변경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품목추가		
시설추가		
취급저장량 증가		

결과번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 검토결과서			
신청 정보	상호(명칭)		담당자 정보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대표자 성명			전자우편 주소	
	취급시설 소재지				
사업장 구분	<input type="checkbox"/> 1군 사업장		<input type="checkbox"/> 2군 사업장		
영업허가 대상	<input type="checkbox"/> 영업자		<input type="checkbox"/> 비영업자		
변경 사항	<input type="checkbox"/> 사업장 구분 변경 : 변경 전 () 군 사업장, 변경 후 () 군 사업장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사유 : ()				
대상물질 수	()종				
검토 결과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조건부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위험도	위험도 변경 여부 <input type="checkbox"/> 동일 <input type="checkbox"/> 변경				
	위험도 수준 <input type="checkbox"/> 가 <input type="checkbox"/> 나 <input type="checkbox"/> 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p>「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변경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화학물질안전원장 직인 </p>					
첨부서류	검토결과 상세내용 1부				

(앞쪽)

요청 번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수정·보완요청서			
신청인	상호(명칭)		담당자 정보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대표자 성명			전자우편 주소	
	취급시설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장 구분	[] 1군		[] 2군		
대상물질수					
수정·보완 제출 기한	년 월 일 까지				
<p>「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위와 같이 요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화학물질안전원장 직인 </p>					

(뒤쪽)

수정·보완 요청 사항 명세		
연번	검토항목	수정·보완 사항

유해화학물질 취급현황

210mm×297mm [백상지 80g/m²]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의4서식] 삭제 <2021. 4. 1.>

안전성 평가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성 평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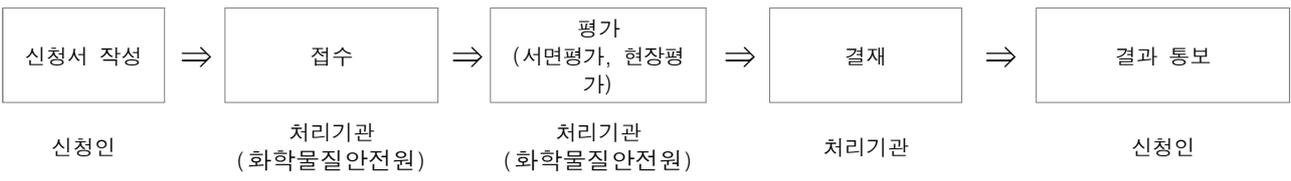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첨부서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화학물질안전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신고 취급시설			
	검사기관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결과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서 1부	수수료 없음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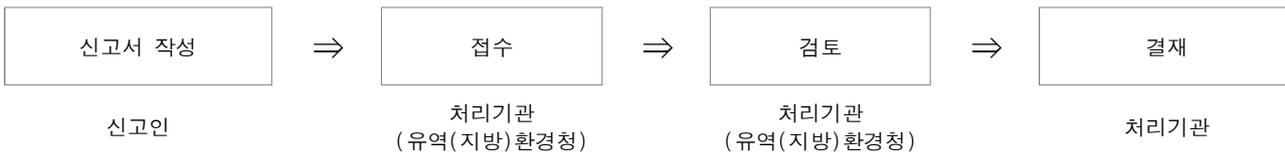
작성방법

취급시설 검사결과서는 검사기관에서 작성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유역(지방)환경청

수신자

(경유)

제 목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수시검사 대상 통지서

1.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귀 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수시검사 대상임을 통지합니다.

2. 따라서 귀 업체에서는 검사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수시검사를 신청하여 정해진 기한 내(년 월 일)에 검사를 실시하기 바랍니다.

붙임 : 수시검사 사유서 1부. 끝.

유역(지방)환경청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허가번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 정기검사
[] 수시검사

결과신고서

제 호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신고인	취급시설 [] 제조·사용시설 [] 보관·저장시설 [] 운반시설 [] 기타			
	취급 화학물질	명칭	연간취급량(톤)	주요용도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6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 정기검사 결과를 신고합니다.
[] 수시검사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서 1부	수수료 없음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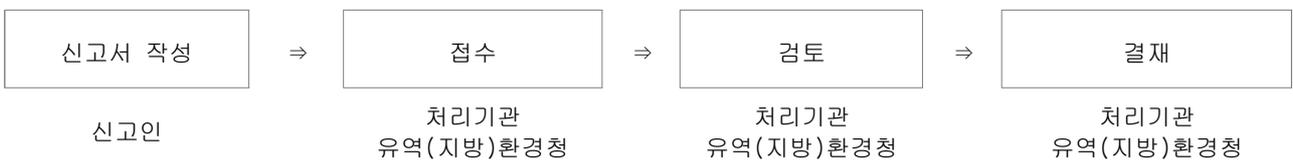
작성방법

허가번호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 시 부여된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결과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안전진단 대상 취급시설		
	검사기관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진단결과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취급시설 안전진단 결과서 1부	수수료 없음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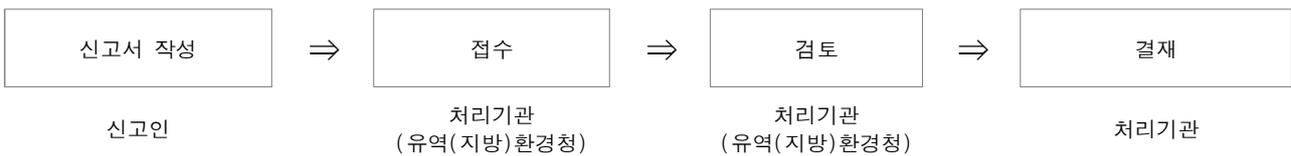
작성방법

취급시설 안전진단결과서는 검사기관에서 작성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제 호

취급시설 개선명령서

1. 상호(명칭) :
2. 사업자등록번호 :
3. 성명(대표자) :
4. 주소(사업장) :
5. 위반 내용 :
6. 개선 사항 :
7. 이행계획서 제출기한 : 년 월 일까지

「화학물질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위 제출기한 내에 개선계획서를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59조제9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유역(지방)환경청장

직인

첨부서류 : [] 개선사항 상세내역 1부

명령번호
제 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명령 이행계획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보고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개선명령 사항		

「화학물질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개선명령 이행 계획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취급시설의 개선명세서 1부 2. 이행계획 및 공사비 1부 3. 이행기간 동안의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수수료 없음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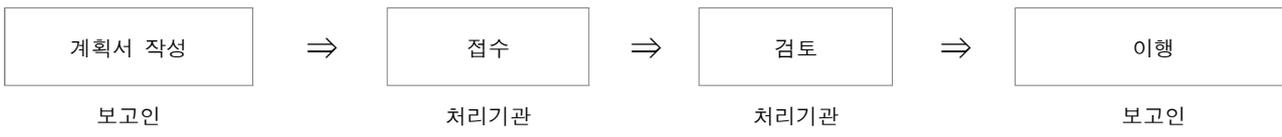
작성방법

명령번호는 개선명령시 부여된 번호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보고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명령번호

제 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명령 이행결과 보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보고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개선명령 사항		

개선명령 이행결과 내용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제5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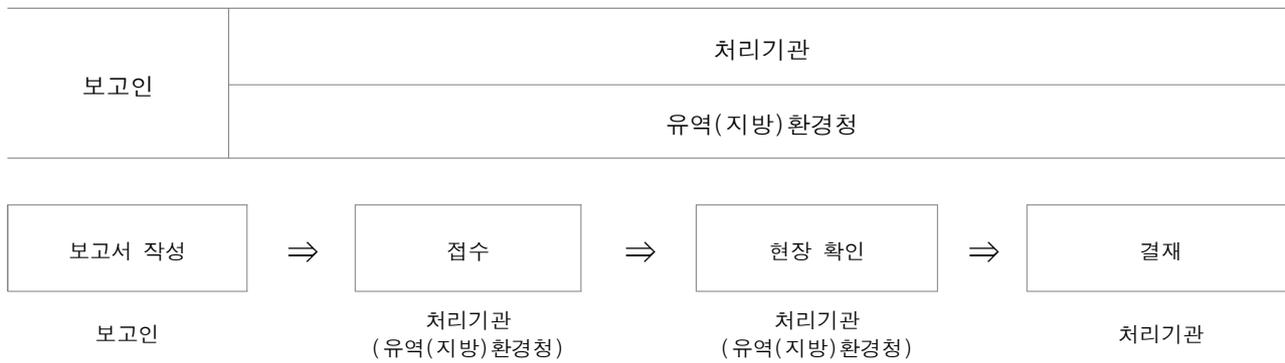
첨부서류	개선명령 이행결과 상세보고서 1부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명령번호는 개선명령시 부여된 번호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 호

취급시설 가동중지 명령서

1. 상호(명칭) :
2. 사업자등록번호 :
3. 성명(대표자) :
4. 주소(사업장) :
5. 가동중지 대상 취급시설 :
6. 위반 내용 :

「화학물질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6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59조제9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유역(지방)환경청장

직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양식)

점검연월일	점검시간 (00:00 ~ 00:00)	소속	점검자성명	서명

점검 항목	이상 유무	비고
① 유해화학물질의 이송배관·접합부 및 밸브 등 관련 설비의 부식 등으로 인한 유출·누출 여부	[] 문제없음 []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 정밀 재점검 필요	
② 고체 상태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를 밀폐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 문제없음 []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 정밀 재점검 필요	
③ 액체·기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을 완전히 밀폐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 문제없음 []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 정밀 재점검 필요	
④ 유해화학물질의 보관용기가 파손 또는 부식되거나 균열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 문제없음 []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 정밀 재점검 필요	
⑤ 탱크로리, 트레일러 등 유해화학물질 운반장비의 부식·손상·노후화 여부	[] 문제없음 []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 정밀 재점검 필요	
⑥ 물 반응성 물질이나 인화성 고체의 물 접촉으로 인한 화재·폭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문제없음 []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 정밀 재점검 필요	
⑦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인화성 가스가 공기 중에 존재하여 화재·폭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문제없음 []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 정밀 재점검 필요	
⑧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는 물질이 취급시설 및 장비 주변에 존재함에 따라 화재·폭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문제없음 []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 정밀 재점검 필요	
⑨ 누출감지장치, 안전밸브, 경보기 및 온도·압력계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	[] 문제없음 []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 정밀 재점검 필요	
⑩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개인보호장구가 본래의 성능을 유지하는지 여부	[] 문제없음 []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 정밀 재점검 필요	
⑪ 유해화학물질 저장·보관설비의 부식·손상·균열 등으로 인한 유출·누출이 있는지 여부	[] 문제없음 []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 정밀 재점검 필요	
⑫ 방류벽, 트렌치(도랑 형식의 배수설비) 등 액체 유해화학물질의 누출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집수시설이 본래의 성능을 유지하는지 여부	[] 문제없음 []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 정밀 재점검 필요	

비고

1. 비고란에는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된 사항 또는 재점검이 필요한 사항을 적습니다.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을 하려는 자는 양식의 점검 항목이 모두 포함된 별도의 서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점검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합니다.

제조업 운반업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사용업 허가신청서
 보관·저장업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5일
------	-----	-----	----------

신청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업종
	④ 대표자 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⑦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신청사항	⑧ 취급시설 보유 여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소유 <input type="checkbox"/> 위탁 <input type="checkbox"/> 임차			
	⑨ 보관·저장시설 소재지 (전화번호:)			
	⑩ 유해화학물질 품목명	⑪ 전체 연간 예상 취급량	톤 또는 m ³	
	⑫ 종업원 수	명	⑬ 사업장 면적 m ²	
	⑭ 보관·저장시설 용량	톤 또는 m ³	⑮ 운반시설 용량 톤 또는 m ³	
	⑯ 매출액(사업장) 억원			
	⑰ 취급시설 현황	취급시설 번호	용량	취급 유해화학물질명
		또는 명칭	(톤, m ³ , m ²)	
	⑱ 관리자 공동 활용 여부	<input type="checkbox"/> 단독 <input type="checkbox"/> 공동	⑲ 취급시설 공동 활용 여부	<input type="checkbox"/> 단독 <input type="checkbox"/> 공동
⑳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input type="checkbox"/> 대상 <input type="checkbox"/> 비대상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적합 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해당 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적합판정을 받은 검사결과서(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 예정량에 관한 자료 1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명세서[시설별 면적(㎡) 및 용량(㎡), 수량, 위치도 및 배치평 면도 등을 적습니다] 1부 유해화학물질 장비·기술인력 명세서 1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증 또는 그 사본(유해화학 물질 운반업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임을 증명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서류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나. 공증인이 공증하고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신청인의 진술서 다.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해당 국가공관의 영사관이 인증한 사서증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서류 	<p>수수료</p> <p>30,00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 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 27,000원)</p>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법 제30조 각 호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신청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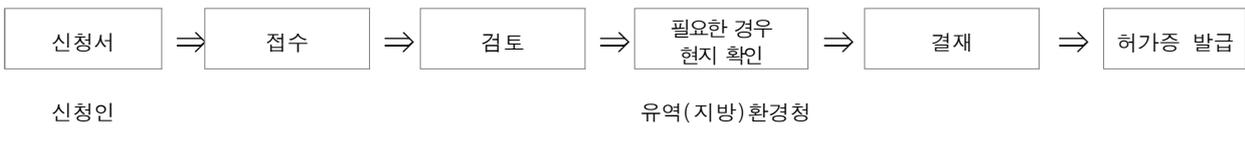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㉓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의 종류를 적습니다.
- ㉔란은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명칭 및 제품명을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 ㉕란은 사업장에서 연간 취급 예상 유해화학물질의 총량을 품목에 관계없이 적습니다.
- ㉖란은 보유하고 있는 운반시설의 전체 용량을 적습니다.
- ㉗란은 최근 3년 동안의 해당 사업장의 평균 매출액을 적습니다(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 ㉘란은 유해화학물질의 보관·저장시설에 대해서만 적습니다.
- ㉙란 및 ㉚란은 「화학물질관리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여부를 적습니다.
- ㉛란은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대상 여부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

취급방식		[] 제조 [] 보관·저장 [] 판매 [] 사용 [] 운반				
유해화학물질			제품명	용도	취급예정량 (톤 또는 m³)	
구분	물질명	고유번호 또는 화학물질 식별번호 (CAS No.)			월간	연간
[] 유독물질 [] 제한물질 [] 사고대비물질						
[] 유독물질 [] 제한물질 [] 사고대비물질						
[] 유독물질 [] 제한물질 [] 사고대비물질						
[] 유독물질 [] 제한물질 [] 사고대비물질						
[] 유독물질 [] 제한물질 [] 사고대비물질						
[] 유독물질 [] 제한물질 [] 사고대비물질						
[] 유독물질 [] 제한물질 [] 사고대비물질						
[] 유독물질 [] 제한물질 [] 사고대비물질						
[] 유독물질 [] 제한물질 [] 사고대비물질						
[] 유독물질 [] 제한물질 [] 사고대비물질						
[] 유독물질 [] 제한물질 [] 사고대비물질						
[] 유독물질 [] 제한물질 [] 사고대비물질						
합 계						

※ 작성방법

1. 취급물질의 유해화학물질 구분이 중복되는 경우 []에 모두 표기합니다.
2. 연간 취급량은 월간 취급량에 12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3. 취급방식이 판매인 경우 용도를 판매로 적습니다.

허가번호	<input type="checkbox"/> 제조업 <input type="checkbox"/> 판매업 <input type="checkbox"/> 운반업 <input type="checkbox"/> 허가증 유해화학물질 <input type="checkbox"/> 보관 <input type="checkbox"/> 사용업 <input type="checkbox"/> 변경허가증 저장업		
제 호			
신청인 (신고인)	상호(명 칭)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취급시설 보유 여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가 <input type="checkbox"/> 위탁 <input type="checkbox"/> 임차		
보관·저장시설 소재지	(전화번호:)		
취급품목명	전체연간취급량	톤 또는	m ³
종 업 원 수	명	사업장 면적	m ²
보관·저장 시설능력	톤 또는 m ³	운반장비능력	톤 또는 m ³
전년도 매출액 (사업장)	억원		
취급 시설 현황	취급시설 번호 또는 명칭	용량 (톤, m ³ , m ²)	유해화학물질명
관리자공동 활용 여부	<input type="checkbox"/> 단독 <input type="checkbox"/> 공동	취급시설 공동활용 여부	<input type="checkbox"/> 단독 <input type="checkbox"/> 공동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제출 대상 여부	<input type="checkbox"/> 대상 <input type="checkbox"/> 비대상		
허가 조건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제4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또는 제29조 제7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input type="checkbox"/> 제조업 <input type="checkbox"/> 운반업 <input type="checkbox"/> 허가 <input type="checkbox"/> 판매업 <input type="checkbox"/> 사용업 <input type="checkbox"/> 변경허가 <input type="checkbox"/> 영업을 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보관·저장업			
년 월 일			
유역(지방)환경청장		직인	

허가번호

제 호

유해화학물질 영업 [] 변경허가신청서
[]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신 청 인 (신 고 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적습니다)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영업종류 [] 제조업 [] 판매업 [] 보관·저장업 [] 운반업 [] 사용업		
변 경 사 항	① 변경 전	② 변경 후	
	취급시설 변경완료일(해당하는 경우만 적습니다)	년	월 일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1호라목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1호바목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증 원본 5. 시범생산 계획서(「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6.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확인한 장외 평가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2호다목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7.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서(취급시설을 변경한 경우만 제출합니다) 8.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변경완료예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시행할 수 있음을 검사기관이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p>수수료 20,00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 하는 경우 18,000원)</p>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1호마목 또는 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1호마목 또는 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법 제30조 각 호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2호마목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신청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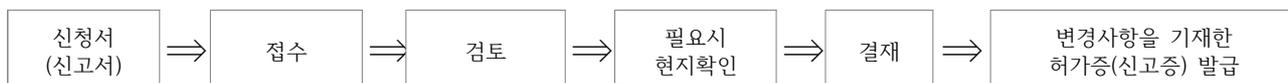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허가번호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시 부여된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2. ①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 시에 제출한 내용 중 변경되는 사항만 적되, 보관·저장시설의 용량 또는 제조·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의 품목을 적습니다.
3. ②란은 ①란의 내용 중 변경되는 사항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신고인)

유역(지방)환경청

제 호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신고증

1. 상호(명칭) :
2. 사업자등록번호 :
3. 성명(대표자) :
4. 주소(사업장) :
5. 허가번호 :
6. 변경신고 내용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7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신고를 마쳤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유역(지방)환경청장

직인

유해화학물질 시약 정보 요약서		이 요약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시약을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며,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준수하여야함을 구매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판매업 상호(명칭)		
판매업 주소		
판매업 대표전화		
유해화학물질 정보	물질명	
	고유번호 또는 화학물질 식별번호(CA S No.)	
	용도	
	취급시설	국소배기장치 등에 대해 기재하여야 합니다.
취급 기준 준수	화학사고 예방	물 반응성 및 위급시 응급대처요령 등에 대해 기재하여야 합니다.
	보관·저장	보관 장소 및 혼합 적재 금지 품목 등에 대해 기재하여야 합니다.
	운반	포장방법 등에 대해 기재하여야 합니다.
	기타	그 밖의 주의사항 등에 대해 기재하여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	------	-----	------	-----

신고인	상 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 소(사업장)	(전화번호:)

신고사항	취급시설 보유 여부	[] 없음 [] 자가 [] 위탁 [] 임차		
	① 보관·저장시설 소재지	(전화번호:)		
	② 취급품목명	③ 전체연간취급량	kg 또는	ℓ
	④ 보관·저장시설능력	톤 또는 m ³	⑤ 운반시설 능력	톤 또는 m ³
	⑥ 종업원 수	명	⑦ 사업장 면적	m ²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라 적성된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명세서[시설별 면적(㎡) 및 용량(㎥), 수량, 위치도 및 배치평면도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사본을 제출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신고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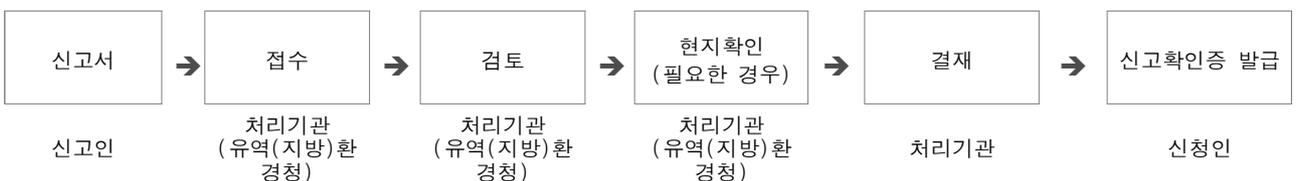
작성방법

- ②란은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명칭 및 제품명을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 ③란은 업소에서 연간 취급 예상 유해화학물질의 총량을 품목에 관계 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 ④란은 ①란의 자가(임차) 보관·저장시설 용량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⑤란은 보유하고 있는 운반장비의 전체용량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신고번호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확인증					
제 호						
신고인	상호(명 칭)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취급시설 보유 여부	[] 없음 [] 자가 [] 위탁 [] 임차					
보관·저장시설 소재지	(전화번호:)					
취급품목명			전체연간취급량	kg 또는 ℓ		
보관·저장 시설능력	톤 또는 m³		운반장비능력	톤 또는 m³		
종업원 수	명		사업장 면적	m²		
취급 품목 현황	유해화학물질명	고유번호 또는 화학물질 식별 번호(CAS No.)	제품명	취급예정량 (kg 또는 ℓ)		비고
				월간	연간	
준수 사항						
<p>「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제3항 또는 제31조의4제3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을 [] 신고 하였습니다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변경신고</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유역(지방)환경청장			<div style="border: 2px solid red; width: 100px; height: 100px;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margin: 0 auto;"> 직인 </div>			

<변경사항>

일자	내용	확인

<처분사항>

일자	내용	확인

<참고사항>

일자	내용	확인

신고번호

제 호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변경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	------	-----	------	-----

신고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변경사항	① 변경 전	② 변경 후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확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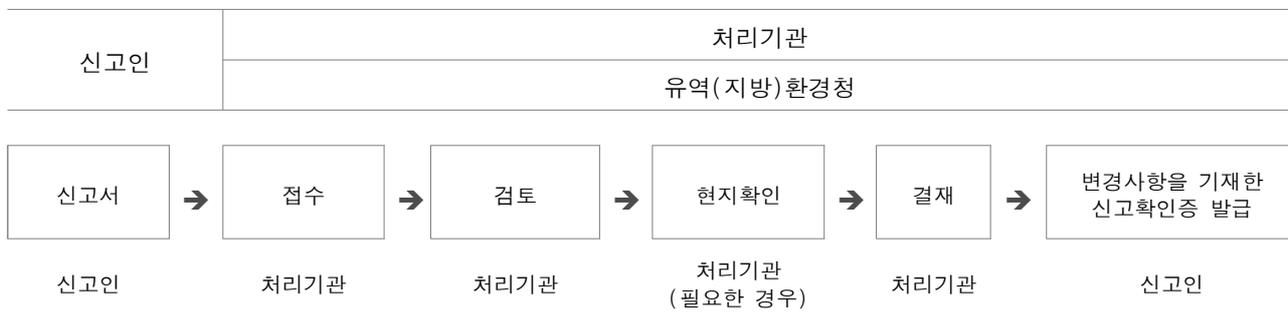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신고번호란은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 시 부여된 신고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①란은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 시에 제시한 내용 중 변경하려는 내용(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 시에 제시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②란은 ①란의 내용 중 변경되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도급인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수급인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도급 사항	도급 내용		
	도급 사유		
	유해화학물질 종류 및 취급량		
	취급시설의 종류 및 규모		
	도급기간		

「화학물질관리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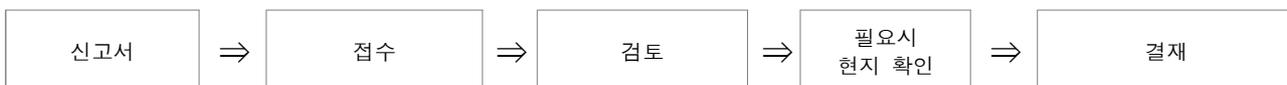
첨부서류	1. 신고인·도급인·수급인의 주요생산품 및 매출액 등에 관한 자료 1부 2. 도급계획서(도급대상 작업의 개요, 도급사유, 수급인이 보유한 개인보호장구 명세서, 수급인의 취급시설 및 인력 명세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제4호에 따른 능력과 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1부 3.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1부 4. 긴급 도급 사유서(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도급받은 업무를 긴급하게 수행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13,00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 는 경우 11,700원)
------	---	--

작성방법

1. 신청인은 신고를 하는 자를 적습니다.
2. 도급인은 실제 도급을 준 자를 적습니다.
3. 수급인은 실제 도급을 받은 자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유역(지방)환경청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도급인	상호(사업장 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변경 사항	① 변경 전	② 변경 후	

「화학물질관리법」 제3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도급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변경된 도급계획서 1부 2.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변경된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1부	수수료 9,00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 7,200원)
------	--	--

작성방법

1. ①란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신고 시 제출한 내용 중 변경하려는 내용을 적습니다.
2. ②란은 ①란의 내용 중 변경되는 내용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유해화학물질관리자 [] 선임 [] 해임 [] 퇴직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Table with 4 columns: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section with fields for name, address, and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사업장 개요 section with fields for hazardous chemical types and employee counts.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 Report type options: 선임을, 해임을 신고합니다., 퇴직을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Table with 2 columns: 첨부서류 (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선임·해임·퇴직서 1부, 2.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명단 1부) and 수수료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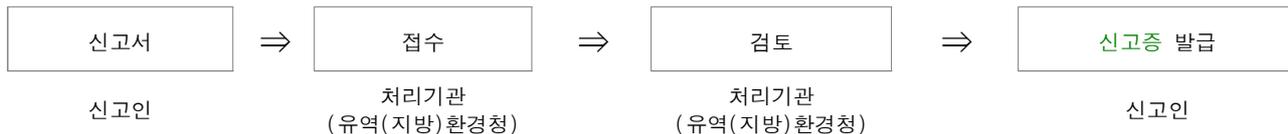
작성방법

①란은 유해화학물질 종류와 유해화학물질별 연간 취급량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유해화학물질관리자 [] 선임서
 [] 해임서
 [] 퇴직서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성명	생년월일	현장 종사기간	자격증	비고

화학과목 및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양성과정 이수 사항

교육 내용	

특기 사항

년 월 일

업소명

인

제 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신고증

1. 상호(명칭) :
2. 사업자등록번호 :
3. 성명(대표자) :
4. 주소(사업장) :
5. 신고내용 : [] 선임 [] 해임 [] 퇴직
6. 유해화학물질관리자(생년월일) :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신고를 마쳤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유역(지방)환경청장

직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기간 연장 승인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명 칭)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유해화학 물질관리자	① 연장 기간		
	연장 사유		
	업무 대리자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3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선임기간 연장을 승인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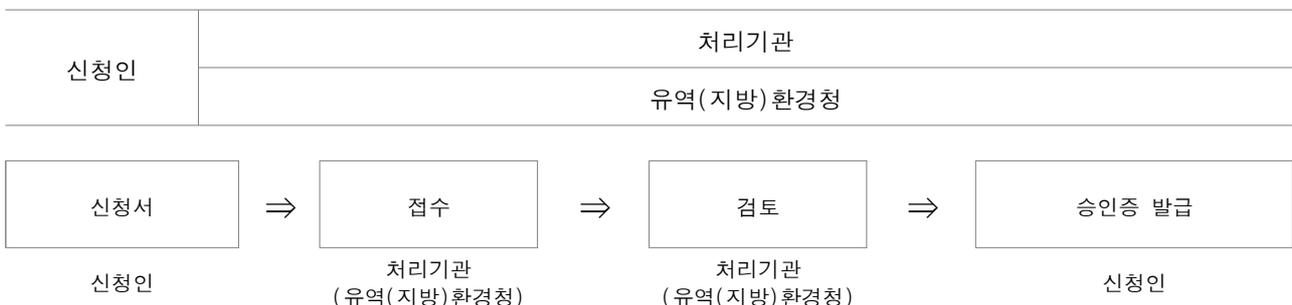
첨부서류	업무 대리자 이력 1부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①란은 30일 이내에서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 호

선임연장 검토결과 통지서

1. 상호(명칭) :
2. 사업자등록번호 :
3. 성명(대표자) :
4. 주소(사업장) :
5. 승인 여부 : [] 승인 [] 불승인
6. 연장 승인기간 :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4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선임 기간 연장 신청을 [] 승인합니다.
[] 불승인합니다.

년 월 일

유역(지방)환경청장

직인

허가번호

제 호

유해화학물질 영업 [] 휴업
[] 폐업
[] 가동중단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신고사항	영업종류	[] 제조업 [] 판매업 [] 보관·저장업 [] 운반업 [] 사용업		
	폐업예정일	년 월 일	[] 휴업 [] 가동중단	예정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휴업·폐업, 가동중단 사유			
	가동중단(재개) 취급시설			
	휴업·폐업, 가동중단 기간 중 유해화학물질 보유 여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계획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 또는 취급시설을 ([] 휴업·[] 폐업·[] 가동중단)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증 원본 2. 영업실적보고서(폐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른 조차사항의 이행여부에 관한 서류 4. 사후 신고 사유서(「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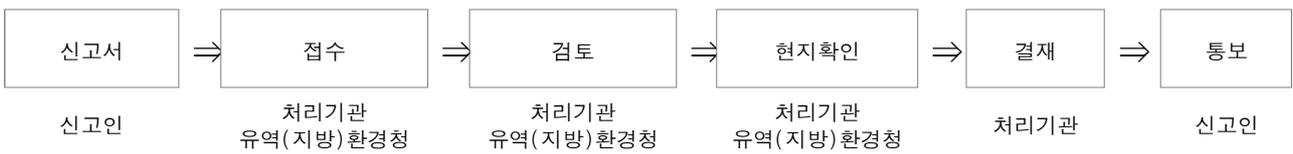
작성방법

허가번호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시 부여된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제 호

개 선 명 령 서

1. 상호(명칭) :
2. 사업자등록번호 :
3. 성명(대표자) :
4. 주소(사업장) :
5. 위반 내용 :
6. 위반 장소 :
7. 위반확인 시간 :
8. 개선조치 사항 :
9. 개선조치 기한 : 년 월 일까지

「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개선조치 기한 내에 위반 내용을 개선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에 따른 개별기준에 따라 추가 조치가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유역(지방)환경청장

직인

첨부서류 : [] 개선조치 상세내역 1부

허가번호

유해화학물질 영업 권리·의무 승계신고서

제 호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신고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승계 사유		

신고사항	구분	승계 전	승계 후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화학물질관리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영업의 권리·의무 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증 원본 2. 권리·의무의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3. 법 제30조 각 호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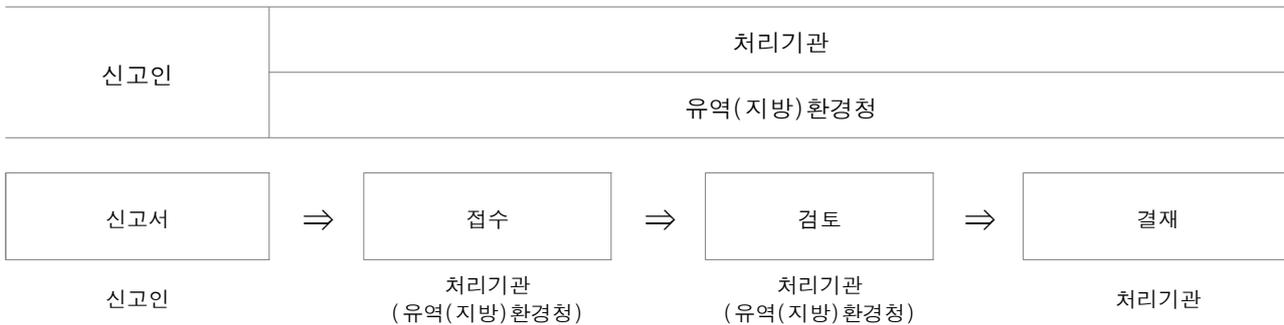
본인은 이 신청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허가번호

유해화학물질 [] 관리자 공동 활용 승인신청서
제 호 [] 취급시설

제 호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신청사항	대표업소명	(전화번호 :)	
	관리자 또는 취급시설의 공동활용업소명		

「화학물질관리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 관리자
[] 취급시설 의 공동 활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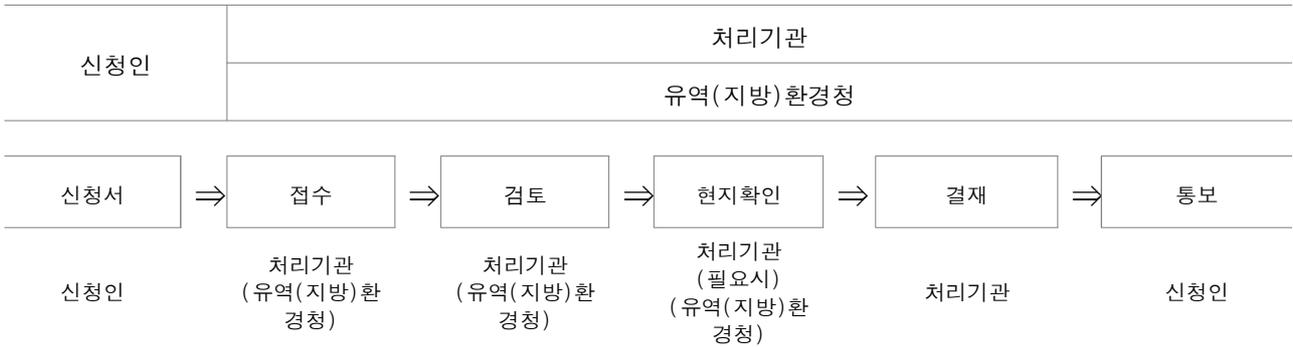
첨부서류	1. 공동활용계획서 1부 2. 개별업소의 명세 및 위치도 1부 3. 개별업소별 유해화학물질 관련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1부 4. 개별업소 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권리·의무 등의 협약서 1부 5. 개별업소별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업무대행자 지정 명세서 1부 ※ 위 첨부서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의 작성방법에 따라 적어야 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허가번호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시 부여된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허가번호

유해화학물질 [] 관리자 공동활용 변경신고서
제 호 [] 취급시설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	-----	-----	------	----

신 고 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대표업소명	(전화번호 :)
	관리자 또는 취급시설의 공동활용업소명	

변 경 사 항	변경 전	변경 후

「화학물질 관리법」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 관리자
[] 취급시설 의 공동활용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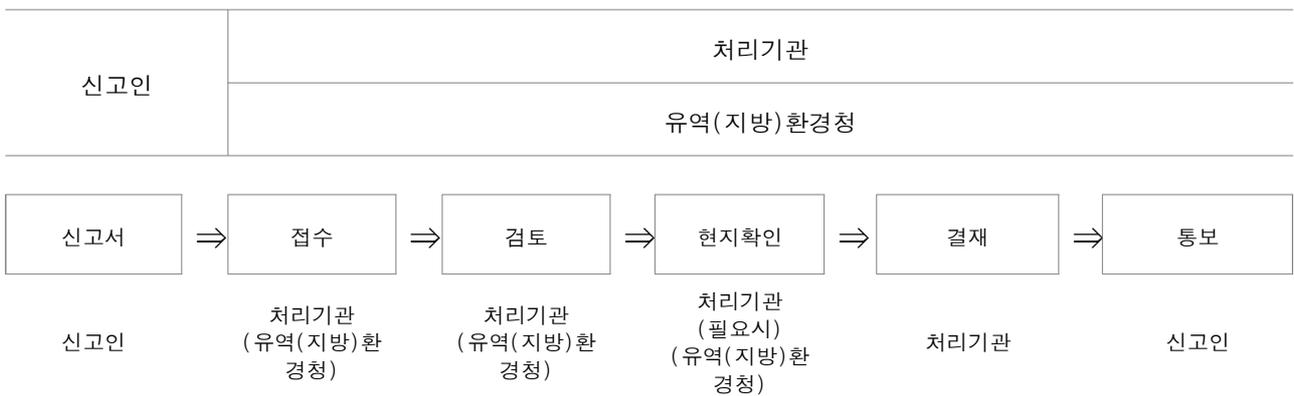
첨부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공동 활용자의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증 원본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허가번호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시 부여된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삭제 <2021. 4. 1.>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서식] 삭제 <2021. 4. 1.>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1호서식] 삭제 <2021. 9. 30.>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서식] 삭제 <2021. 4. 1.>

00년 0월 0일, 00:00현재(최초, 중간, 최종)			
보고자	소속	직책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화학사고 상황보고서

1. 사고개요

- 가. 일 시: 년 월 일 시 분(요일)
- 나. 장 소:
- 다. 사고내용
○
- 라. 사고원인
○
- 마. 사고시설 현황(유발자 현황)
○

2. 피해상황

- 가. 인명피해: 00명(사망 0명, 중상 0명 경상 0명 등)
- 나. 재산피해:

3. 수습(조치)현황

- 가. 사고접수시간: 년 월 일 시 분(신고자 ○○○ → 접수자 ○○○)
- 나. 시간대별 수습(조치)사항

일자	시간	주요조치내용

- 다. 방제장비 등 동원현황
 - 동원인력: 00명(기관별 동원인력을 상세히 기록합니다)
 - 동원장비: 00대(소방차·탱크로리 등 현장수습 활동에 동원된 장비를 상세히 기록합니다)
 - 방제장비
 - 오일펜스·흡착포·유처리제·방제약품 등 그 밖의 장비·자재 동원 명세

4. 사고관리

- 가. 주변지역에 미친 영향
 - 대기:
 - 수질: 수계 및 취·정수장에 미친 영향
 - 토양: 주변 주거지역 등 오염 현황 등
 - 주변 주거지역 주민 피해 현황
- 나. 사고지역 사후관리 활동
 - 오염토양 제거, 주민피해 보상 조치 등

5. 사고발생업소 조치

일자	관련법령	조치내용	조치기관

6. 사고발생 원인 및 재발방지 대책

- 사고발생 원인:
- 재발방지 대책(향후 조치계획 등)

7. 기타

- 언론취재 여부 등

[비고]

1. 사고보고는 최초·중간·최종보고로 구분하되 최초보고는 사고발생 개요와 피해 현황을 정리하여 가장 빠른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2. 최종보고는 사고를 완전히 수습한 후 수습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며, 최종보고서에는 사고 유발자 등의 관계법 위반에 대한 조치 내용, 사고발생 원인, 사고지역 관리방법, 향후 조치계획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제 호

화학사고 발생시설 가동중지명령서

사업장명:

소재지:

전화번호:

「화학물질관리법」 제4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의 가동을 중단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가동중지 대상시설	
가동중지 사유	
가동중지 기간	20 . . . ~ 별도 해제 명령시까지

유역(지방)환경청장

직인

통지번호 : _____ 호

가 동 중 지 표 지

화학물질관리법 제4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시설에 대하여 가동중지를 명하니 안전·환경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후 지방환경관서장의 확인을 받아 시설 가동을 재개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위반할 때에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가동중지 대상	
가동중지 사유	
가동중지 기간	20 . . . ~ 별도 해제 명령시까지

년 월 일

유역(지방)환경청장

현장수습조정관 (인)

※ 표지에 통지번호가 없는 것은 효력이 없으며, 이 표지는 지방환경관서장의 허가 없이 제거할 수 없습니다.

※ 문의전화 :

주) 1. 글자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글자의 구분	글자의 크기	글자의 종류	색상
가 동 중 지	16×16(mm)	돋움체	빨강
유역(지방)환경청장	6×6(mm)	"	검정
나 머 지	4×4(mm)	"	"
※ 이표지는 ~	4×4(mm)	"	빨강

2. 재료는 스티커로 하고 전체 크기는 164×185(mm)를 기본으로 2~4배 크기를 종류별로 제작하여 비치하고 작업장의 여건에 따라 적절한 크기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테두리띠는 두께 8(mm)이고 노란색으로 하고 바탕색은 흰색으로 한다.

확인번호		화학사고 발생시설 가동중지명령 해제 확인서		
제 호				
요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명령 해제 사유		명령해제 사유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하여 사업장에 명령 해제의 정당성 및 타당성 설명 필요		
명령 해제 시점		년 월 일부터		
<p>「화학물질관리법」 제44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의3제3항에 따라 위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해제 확인서를 발급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유역(지방)환경청장 직인</p>				

제 호

화학사고 조치명령서

1. 상호(명칭) :
2. 사업자등록번호 :
3. 성명(대표자) :
4. 주소(사업장) :
5. 조치명령 사항 :
6. 이행계획서 제출기한 :

위 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로 인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대한 피해의 최소화 및 제거, 화학물질로 오염된 지역에 대한 복구를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화학물질관리법」 제4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58조제10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유역(지방)환경청장

직인

첨부서류: 조치명령 상세 내역서 1부

명령번호
제 호

화학사고 조치명령 이행계획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허가 업종		

조치명령 이행 계획

「화학물질관리법」 제4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에 대한 이행계획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이행계획서 상세 내역 1부	수수료 없음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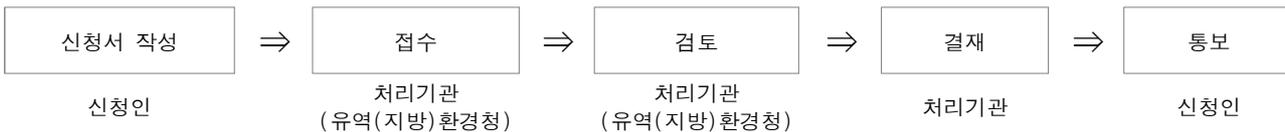
작성방법

명령번호는 조치명령 시 부여된 번호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명령번호
제 호

화학사고 조치명령 이행결과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허가 업종		

조치명령 이행 결과

「화학물질관리법」 제4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이행결과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이행결과서 상세 내역 1부	수수료 없음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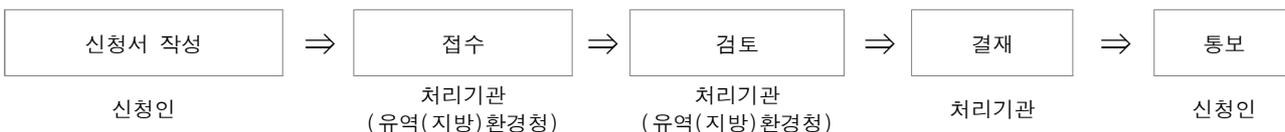
작성방법

명령번호는 조치명령 시 부여된 번호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제 호

화학사고 조치명령 이행확인서

1. 상호(명칭) :
2. 사업자등록번호 :
3. 성명(대표자) :
4. 주소(사업장) :
5. 조치명령 사항
6. 이행 완료일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제4항에 따라 화학사고 조치명령의 이행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유역(지방)환경청장

직인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보고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종업원수	명	매출액	억원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보고사항	실적 보고 내용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대한 실적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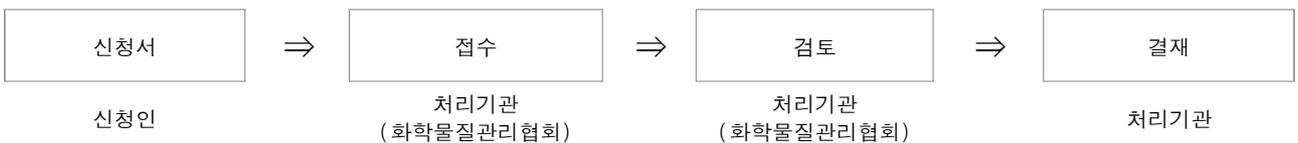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협회 귀하

처리절차

이 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보고인	처리기관
	「화학물질관리법」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 받은 화학물질관리에 관한 협회



금지물질		<input type="checkbox"/> 제조 <input type="checkbox"/> 수입 <input type="checkbox"/> 판매	세부실적보고(년도분)		
허가번호 : 제 호					
보 고 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장 경유하천		()			
금지물질 취급 세부실적					
제품명 (상품명)	금지물질명	금지물질 함유량 (%)	제조(수입/판 매량) (톤/년)	주요용도	금지물질번호 또는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합 계					
첨부서류 : 금지물질 []제조 []수입 []판매 상세 내역서 1부					

허가물질		<input type="checkbox"/> 제조 <input type="checkbox"/> 수입 <input type="checkbox"/> 사용	세부실적보고(년도분)		
허가번호 : 제		호			
보 고 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장 경유하천		()			
허가물질 취급 세부실적					
제 품 명 (상 품 명)	허가물질명	허가물질 함유량 (%)	제 조(수입/사용))량 (톤/년)	주요용도	허가물질번호 또는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합 계					

제한물질 수입 세부실적보고(년도분)

허가번호: 제 호

보 고 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장 경유하천		()		

제한물질 수입 세부실적

제품명 (상품명)	제한물질명	제한물질 함유량 (%)	수입량 (톤/년)	주요용도	제한물질번호 또는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합 계					

화학물질 [] 제조 [] 수입 [] 사용 [] 판매 관리대장																			
제품(상품)명:				주요용도:															
금지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유독물질, 사고대비물질				1.				2.				3.							
함량:				1. %				2. %				3. %							
																		(단위: 톤)	
입고량								출고량										재 고 량	비 고
연월일	이 월 량	제조·수입· 구입량		구입명세				연월일	사용·판매량		판매명세								
		구분	수량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화 번호		구분	수량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화 번호	구매 용도	구매자 영업허가 구분			

비고: 구매자 영업허가 구분란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라 허가받은 영업의 업종을 적거나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면제의 경우에는 면제로 적습니다.
297mm×210mm[백상지 80g/m²]

화학물질 보관·저장 관리대장

제품(상품)명:	주요용도:					
금지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유독물질, 사고대비물질	1.	2.	3.			
함량:	1.	%	2.	%	3.	%

(단위: 톤)

연월일	이월량	위탁인				연월일	위탁인				재고량	비고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입고량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출고량		

화학물질 운반 관리대장

제품(상품)명:	주요용도:		
금지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유독물질, 사고대비물질	1.	2.	3.
함량:	1. %	2. %	3. %

(단위: 톤)

연월일	운반량	출발지점	도착지점	차량번호	위탁인				비고
					상호(성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외부인 및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대리 참관자 출입 관리대장

연월일	출입시간 (00:00 ~ 00:00)	성명	연락처	차량번호	출 입 목 적

※ 외부인이 차량을 가져오지 않은 경우에는 차량번호를 적지 않습니다.

자료보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신청사항	자료보호 신청 내용			

「화학물질관리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자료의 보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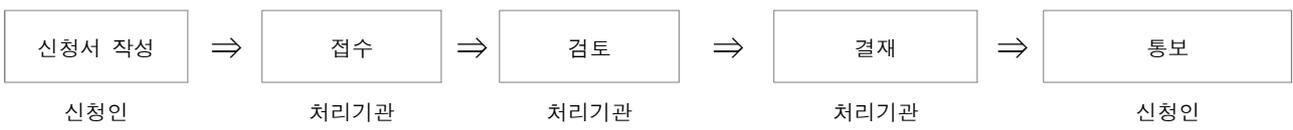
환경부장관 · 화학물질안전원장 · 유역(지방)환경청장 · 협회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보호내용의 요지 및 이유서 1부 2. 보호 대상 자료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 유역(지방)환경청, 협회



자료보호 기간 연장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신청사항	① 통지번호			
	자료보호 항목			
	자료 보호기간 만료 예정일	년	월	일
	② 보호요청 연장기간	년	월	일까지
	보호요청 연장 사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21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제2항에 따라 자료의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 화학물질안전원장 · 유역(지방)환경청장 · 협회의 장 귀하

첨부서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제3항에 따른 자료보호 신청 검토 결과서 원본 1부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①란은 자료보호 신청시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안전원장, 국립환경과학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협회의 장에게서 받은 통보서의 통지번호를 적습니다.
- ②란은 자료보호기간 만료 예정일을 기준으로 5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 유역(지방)환경청, 협회



